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재산명시 선서 및 재산조회 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법행정 전공

이 기 혁

2009년 8월

재산명시 선서 및 재산조회 제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하 승 수

이 기 혁

이 논문을 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이기혁의 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년 8월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2
제 3 절 연구의 방법	2
제 2 장 재산명시선서 및 재산조회 제도의 의의와 연혁	3
제 1 절 재산명시선서의 의의	3
제 2 절 재산명시제도의 연혁	3
제 3 절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4
제 3 장 외국의 재산명시제도	4
제 1 절 일본의 재산명시제도	5
1. 재산개시절차의 성립	5
2. 재산개시절차의 결정	6
3. 재산개시의무	9
4. 재산개시기일의 절차	10
5. 재산개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2
제 2 절 한국과 일본의 재산명시제도의 비교	13
1. 신청채권자의 범위 등	13
2. 재산명시절차의 공개 여부	14
3. 도산처리절차와의 관계	15
4. 명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5
5. 정보의 목적외이용에 대한 제재	21
6. 향후의 동향	22

제 3 절 독일의 재산명시제도	23
1. 의의	23
2. 선서보증절차의 개시	24
3. 선서보증기일의 실시	25
제 4 절 한국과 독일의 재산명시제도의 비교	26
1. 절차의 주재자	27
2. 대상	27
3. 요건	27
4. 제재	27
5. 등재	28
제 4 장 현행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의 내용	28
제 1 절 재산명시제도	28
1.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28
2. 요건	31
3. 재산명시명령의 신청과 관할	34
4. 신청에 대한 재판	36
5.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38
6.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42
7. 재산명시기일의 연기	48
8. 재산목록의 정정·보완	50
9.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52
10. 집행정지의 취소	53
11.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54
12. 재산명시의 재신청	65
제 2 절 재산조회제도	66
1.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66
2. 신청대상과 대상기관	67

3. 신청요건	68
4. 신청방법	68
5. 신청절차	69
6. 조회신청	69
7. 재판	70
8. 해당기관 조회내용 제출	71
9.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 등	71
제 5 장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4
제 1 절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의 문제점	74
1. 재산관계명시 및 재산조회현황	74
2. 감치 및 과태료의 현황	77
3.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의 문제점	79
제 2 절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의 개선방안	81
제 6 장 결론	81

참 고 문 헌		84
부 록 1	재산명시신청서	87
	2 재산명시명령결정	88
	3 재산명시기각결정	89
	4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90
	5 재산명시명령취소결정	91
	6 재산명시이의 기각결정	92
	7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93
	8 재산명시기일통지서	94
	9 재산명시절차안내 및 재산목록작성요령	95

표 차례

<표1>	해당기관과 재산조회 대상	72
<표2-1>	재산관계명시 및 재산조회(2002~2008년)	74
<표2-2>	감치·과태료 사건(2004년)	77
<표2-3>	감치·과태료 사건(2005년)	77
<표2-4>	감치·과태료 사건(2006년)	78
<표2-5>	감치·과태료 사건(2007년)	78
<표2-6>	감치·과태료 사건(2008년)	79

그림 차례

<그림 1>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감치절차(한국)	17
<그림 2>	일본의 재산개시의무위반자 등에 대한 과료절차	18
<그림 3>	재산명시절차	3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후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이행기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악의를 가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하였거나 모처에 숨겨 놓았다면 상당한 난항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제수단의 하나가 재산명시제도이다.

재산명시제도(財産明示制度,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2)는 불성실 또는 악의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실현하려고 할 때 그 실현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반강제집행의 보조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재산명시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재산명시제도는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한계점과 문제점 또한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는 먼저 해외의 재산명시제도를 살펴보고, 이와 비교한 국내 재산명시제도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한다. 또한 재산명시제도의 실시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넓은 의미의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금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려울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선서하도록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공공 기관,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 세 가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재산명시 선서를 재산명시절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산조회제도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재산명시절차 중 재산명시선서와 재산조회제도를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하여 고찰해 본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재산명시절차 중 재산명시선서와 재산조회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이후 한국의 재산명시제도의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주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문헌 및 자료에 대해 조사하는 문헌조사가 있으며 둘째는 해외의 국가별 사례를 탐구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폭넓은 시야로서 재산명시절차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재산명시절차와 비교자료로 활용한다.

제 2 장 재산명시선서 및 재산조회 제도의 의의

제 1 절 재산명시선서의 의의

재산명시선서제도(구 재산관계명시선서제도)는 채무자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진실성을 가지고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법정에서 선서하게 하는 제도로서 강제집행의 보조수단, 채권자취소권제도의 이용편의 및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이 있다.

제 2 절 재산명시제도의 연혁

1990년 1월 13일 개정되기 이전의 민사소송법은 독일 법을 들여왔다. 그러나 독일 민사소송법 중에서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는 선서보증제도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발견이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가 채권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1990년 1월 13일에 개정된 구 민사소송법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의 상세내역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법관 앞에서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산명시절차(구 민사소송법 제524조 제2항 내지 8항)를 신설하여 책임재산의 수색, 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재산명시절차는 뒤늦게나마 독일민사소송법상의 선서보증제도를 도입한 것이기는 하나 독일의 선서보증제도와는 달리 재산명시기일예의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의 거부, 선서거부, 허위재산목록의 제출 등에 대하여 형사 처분로만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범위도 지나

치게 한정하여 재산명시제도의 근본취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로 실효성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하여 2002년 1월 26일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구 민사소송법이 도입한 재산명시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채무자의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선서불이행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치에 처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과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넓히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였다. 특히, 감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재산명시절차는 독일법상의 선서보증제도에 더욱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제 3 절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중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에 따라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7월에 민사집행법으로 새로 제정·추가되어 도입된 것이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은행과 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 및 그 연합회, 단체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가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의 재산명시제도

독일은 가장 선진국화된 수준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일본도 독일의 법제도를 수입함으로써 우리와 비

슷한 환경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독일과 일본을 주축으로 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입법의 방향과 비교해 본다.

제 1 절 일본의 재산명시제도

종래 일본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한국, 미국, 독일 등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이미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자 일본도 이를 모범으로 하여 권리실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해졌다. 이에 담보 물건 및 민사집행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의 일부 개정에 의하여 재산개시절차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개정된 민사집행법이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원래 일본이 재산개시절차를 창설한 때에 독일의 재산명시절차를 모범으로 한 관계상, 일본의 재산개시절차와 독일의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의 재판소 출두, 재산목록의 제출과 선서에 기초를 잡은 내용의 확인, 출두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 절차의 바탕에 있어서는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¹⁾ 그러나 일본법에서는 일본 특유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독일법과 다른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1. 재산개시절차의 성립

일본의 재산개시절차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이 성립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재산개시절차를 신청하여 재판소가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시키고 채무자가 재산개시기일에 선서를 한 다음 재산목록에 기초한 진술을 하는 절차이다.

재산개시절차는 체계적으로는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2장), 담보권실행경매 등(동법 제3장)과 함께 민사집행절차의 하나이다(동법 제4장).

재산개시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절

1) 榎本光宏(에노모토 미쯔히로), “財産開示手續”, 『金融法務事情』 1696호, 2003, 8면.

차이지만 강제집행, 담보권실행경매 등과는 달리 최종적인 채권의 만족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²⁾

재산개시절차는 크게 나누어 2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재산개시명령은 재판소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개시절차 실시 필요성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실시결정을 하는 절차이고, 재산개시선서 절차는 재판소가 재산개시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를 호출하여 기일에 출두한 채무자에게 선서를 시킨 다음 그 재산에 관해 진술시키는 절차이다.

2. 재산개시절차의 결정

1) 관할

재산개시절차는 보통 채무자의 재판적소재지(민사소송법 제4조)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가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이는 기일에 채무자를 재판소가 호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신청채권자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는 채권자 및 일반선취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재산개시절차의 신청채권자이다(민사집행법 제197조 제1항, 제2항).³⁾ 집행권원의 가운데 가집행 선언인 것(동법 제22조, 제2호, 제4호), 집행증서(동조 제5호) 및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지불독촉(동조 제7호)을 가진 채권자는 재산개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동법 제194조 제1항). 이는 재산개시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가 일단 개시되면 이것이 개시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재판소의 판단인 가집행 선언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금전채권에 한하여 집행권원성이 인정되고 있

2) 今井輝幸(이마이 테루유키), “일본의 재산개시절차”, 『법조』 제54권 제9호, 2005, 244면.

3) 하나의 집행권원에 둘 이상의 채무자가 있을 경우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 기초해 복수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개시절차의 신청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재산개시절차는 채무자별로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의 사건으로서 신청할 수 없다고 본다.

는 집행증서 및 지불독촉도 제외하였다.

일반선취특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집행권원이 있는 일반채권과 같고, 일반선취특권의 보호를 도모할 사회 정책적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재산개시절차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다(동법 제197조 제2항).

3) 재산개시절차 결정의 요건

(1) 강제집행의 실시가능

집행권원에 기초한 재산개시절차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반 강제집행과 같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97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집행권원의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있을 것, 청구가 확정기한의 도래에 달린 경우에는 그 기한의 도래 후 일 것(동법 제29조 내지 제31조) 등이 필요하다. 일반선취특권에 기초한 재산개시절차를 실시하려면 일반담보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가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2) 필요성

재산개시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라고 하는 개인에 속하는 사항을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첫째, 재산개시절차의 실시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에 있어서의 배당 등⁴⁾의 절차(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종료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신청인이 당해 금전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었을 것(동법 제84조 제3항)을 필요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신청일 이전의 6개월 이내에 배당절차가 실시되었지만 그 절차에서 채권액의 일부 밖에 배당받을 수 없었던 경우이다. 둘째, 알려져 있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신청인이 당해 금전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4) 배당 등이란 배당(민사집행법 제166조 제2항, 제84조 제1항)또는 변제금의 교부(동법 제 166조 제 2항, 제 84조 제2항)를 말한다(동법 제84조 제3항)

얻을 수 없다는 점이 소명될 것(동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항 제2호)을 필요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서 채권자에게 알려진 재산이 주거 내 동산 및 예금채권밖에 없고, 이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도 그 배당 등의 절차에서 채권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들 수 있다.

(3) 예외

재산개시절차에 의하여 일단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가 개시된 후 단기간 내에 그 재산상황에 큰 변동이 생기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기초한 재산개시절차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된 절차의 기록을 열람시키는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의 취득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개시절차에 의한 채무자의 부담을 가능한 가볍게 한다는 취지에서 과거 3년 내에 재산개시기일에 그 재산에 관하여 진술을 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개시절차를 실시 할 수 없다.(동법 제197조 제3항).⁵⁾ 다만 채무자가 재산개시기일에 일부의 재산을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나 채무자가 재산개시기일 후에 새로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또는 재산개시기일 뒤에 채무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했을 때에는 당해 기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재차 재산개시절차를 신청 할 수 있다.

(4) 고지

재산개시절차 실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동법 제197조 제4항). 이 결정이 확정된 재산개시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를 호출한다. 재산개시기일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불출두 등에는 과료의 제재가 과하여지므로 고지방법을 송달로 한정하고 있다.

4) 불복신청

5) 어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개시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후 재산개시기일이 종료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재산개시절차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97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수 개의 재산개시사건이 계속하게 되지만, 이 경우 재판소는 사건을 병합한 다음 재산개시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개시절차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집행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7조 제5항), 재산개시절차의 실시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동법 제6항). 재산개시절차 실시결정은 채무자의 사생활을 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와 균형상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집행항고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일지정 및 호출

재판소는 재산개시절차 실시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재산개시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 및 채무자(채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호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98조).

3. 재산개시의무

1) 개시의무자

개시의무자(재산개시기일에 출두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진술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지만, 채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개시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개시의무자는 그 자신이 재산개시기일에 출두하여 선서한 후에 진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진술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 등

개시의무자는, 재산개시기일에서의 진술시점을 기준으로, 그 소유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의 신청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이외에도 신청인에게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최고 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구체적으로는 민사집행규칙 제184조)을 명시하여 진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민사집행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다만, 차압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있는 의복 등의 생활필수품(동법 제131조 제1호) 및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식료, 연료(동조 제2호)에 관하여는 진술할 필요가 없다(동법 제199조 제1항).⁶⁾

재판소는 재산개시기일을 지정할 때 개시의무자가 재산목록을 재판소에 제출하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개시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3조 제1항). 개시의무자는 재산개시기일에서의 진술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동조 제2항) 이를 상기의 제출기한까지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3) 진술의무의 일부면제

재산개시절차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적극적 재산을 개시시키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199조 제1항). 신청인의 채권액 범위 내로 한정하여 진술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재산개시절차 내에서 재산의 가액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생겨 절차의 신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시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재판소의 허가에 의하여 개시의무자의 진술의무를 일부 면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 200조 제1항). 이것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나, 채무자 재산의 일부만을 개시하더라도 신청인 채권의 완전한 만족에 지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개시의무자에게 그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진술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생활을 가능한 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진술의무의 일부면제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4. 재산개시기일의 절차

1) 개시의무자의 선서

개시의무자는 재산개시기일에 출두하여 선서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99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다만 개시의무자가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

6) 今井輝幸(이마이 테루유키), 전제논문, 248면.

자이지만 16세 미만일 경우,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서를 시킬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99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재판소는 선서에 앞서 개시의무자에 대하여 선서의 취지 및 개시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과료의 제재가 과하여진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5조 제 1항).⁷⁾

2) 재판소 및 신청채권자의 질문

재판소 및 신청채권자는 재산개시기일에 개시의무자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9조 제3항, 제4항). 다만, 신청채권자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재판소의 허가를 얻은 사항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재산개시기일을 시점으로 한 채무자의 재산상황과의 관련성이 희박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은 경우

재산개시기일에 개시의무자가 출두하지 않은 경우, 재판소는 속행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절차의 실시불능으로 재산개시절차를 종료시킬 수도 있다. 반대로 신청채권자가 출두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시일의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9조 제5항).

4) 절차의 비공개

재산개시일의 절차는 비공개이다(민사집행법 제199조 제6항). 재산개시기일에 진술이 강제되는 사항은 채무자의 사생활에 속하기 때문이다.⁸⁾

5) 도산처리절차와의 관계

7) 今井輝幸(이마이 테루유키), 전계논문, 250면.

8) 今井輝幸(이마이 테루유키), 전계논문, 251면.

재산개시절차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 기타 도산처리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에 관하여 각 도산처리절차의 성질에 따라 개정법 부칙에 의하여 관련법규가 정비되어 있다.

(1) 실효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계속 중인 재산개시절차는 실효된다(파산법 제42조 제6항). 파산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개별적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재산개시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한 파산자의 재산관계는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관재인에 의해 조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중지

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생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과의 균형상 재생채권에 기초한 재산개시절차의 신청을 하지 못하며 이미 신청된 재생채권에 기초한 재산개시절차는 중지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5. 재산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재산개시의무 위반

개시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소의 호출을 받은 재산개시기일에 출두하지 않거나, 재산개시기일에 선서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3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 제1호). 재산개시기일에 선서한 개시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다(동항 제2호).⁹⁾

2) 개시된 정보의 목적 외 이용

9) 今井輝幸(이마이 테루유키), 전계논문, 252면.

재산개시기일의 기록에 대하여 신청채권자, 신청자격을 가지는 다른 채권자, 채무자 및 개시의무자는 열람·등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201조).

재산개시절차 및 그 기록의 열람 등에 의해서 얻어진 채무자의 재산 또는 채무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 202조).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하고 있다(동법 제 206조 제2항). 이 제재규정에 의하여 개시된 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는 실질적으로는 개시의무자에 대하여 재산개시를 하도록 압박하는 심리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제 2 절 한국과 일본의 재산명시제도의 비교

일본이 재산개시절차를 창설할 당시에, 독일의 재산명시절차를 롤(role) 모델로 한 관계로 일본의 재산개시절차와 한국의 재산명시절차는 상당부분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채무자의 재판소 출두, 재산목록의 제출, 선서에 기초한 내용의 확인(한국법에서는 해석상, 일본법에서는 명문상 재판소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질문권도 인정하고 있다.),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 등이 유사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일본법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일의 제도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1. 신청채권자의 범위 등

먼저 재산명시 또는 개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범위에 한국법과 일본법의 차이가 있다. 즉, 일본법에서는 집행증서(민사집행법 제22조 제5호) 및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불독촉(동조 제7호)을 가진 채권자는 재산개시절차의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한국법에서는 집행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및 확정된 지급명령(동조 제3호)을 가진 채권자도 재산명시절차의 신청권자에 해당한다. 일본법에서는, 재산개시절차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일단 개시하게 되면 이것은 개시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절차의 특징을 고려하여 금전채권에 한하여 집행권원성이 인정되고 있는 집행증서 및 지불독촉을 제외한 것이다.

또한 집행권원의 범위뿐만 아니라, 재산명시절차 실시요건에도 차이가 있다. 일본법에서는 첫째,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에 있어서의 배당 등의 절차에서 신청인이 당해 금전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었을 것, 둘째, 알려져 있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신청인이 당해 금전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 소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법의 경우 이를 요구하지 않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다.

어느 입법이 더 실효성이 있고 정교한지는 논하기 어려우나, 절차의 요건이라는 점에서는 한국의 재산명시절차가 일본의 재산개시절차보다 신청이 용이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재산명시절차의 공개 여부

상기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법에서는 재산개시기일에 진술이 강제되는 사항은 채무자의 사생활에 속한다는 점에서 재산개시기일의 절차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199조 제6항). 이에 반해 한국법에서는 재산명시기일을 비공개로 하는 명문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재산명시기일은 재판의 심리나 판결 선고를 위한 기일은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여도 지장이 없고, 절차의 성질상 비공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각 법원의 실정에 따라 심문실이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재산명시기일이 열리는 경우는 있다.

재산명시기일은 반드시 공개할 필요는 없는 절차라는 점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재산명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아래 명시를 강제하는 것이고 재산관계는 채무자의 사생활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생활보호의 관점을 한결음 더 발전시켜 재산명시기일을 비공개로 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일본법의 경우가 더욱 타

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도산처리절차와의 관계

재산개시절차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 기타 도산처리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일본법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도산처리절차의 성질에 따라 재산개시절차의 실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산개시절차는 실효되고, 재산개시절차가 진행 중인 재판소는 동 절차의 실효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한국법에서는 재산명시절차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처리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산처리절차 법규에도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다. 물론 재산명시절차의 개시를 위해서는 집행개시요건이 필요하다는 점(민사집행법 제61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관계상(파산법 제15조)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동법 제61조) 결과, 채무자의 파산은 집행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산명시절차는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위 파산법의 각 규정은 도산처리절차 법규통합 후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년 4월 1일 시행)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동법 제424조, 제348조).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절차가 당연히 실효하는지, 재산명시절차가 계속 중인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실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정비차원에서 도산처리절차 법규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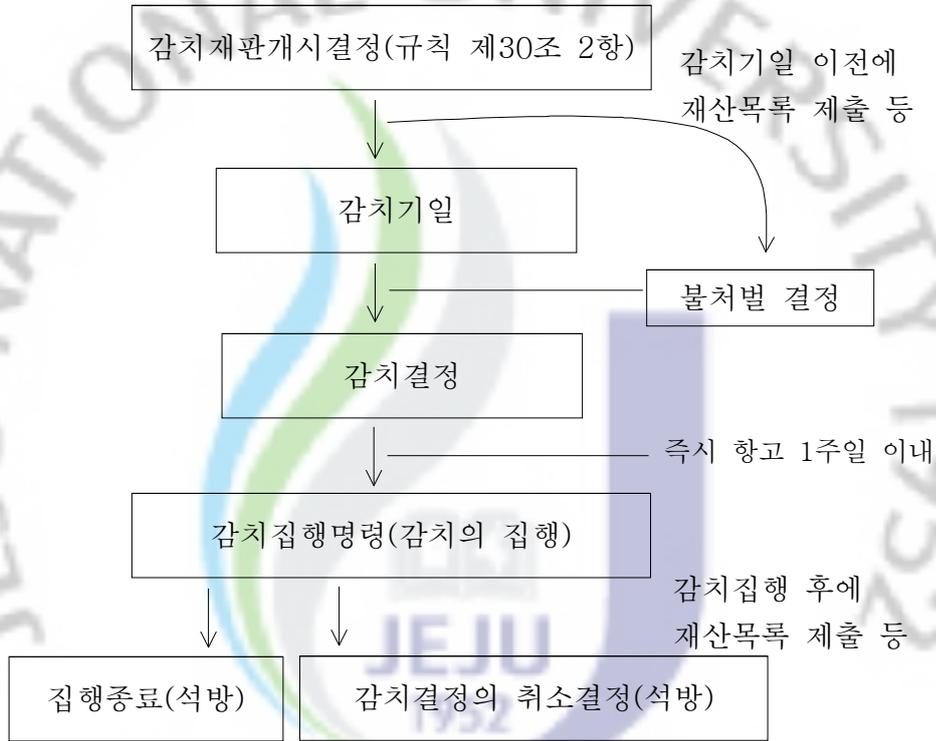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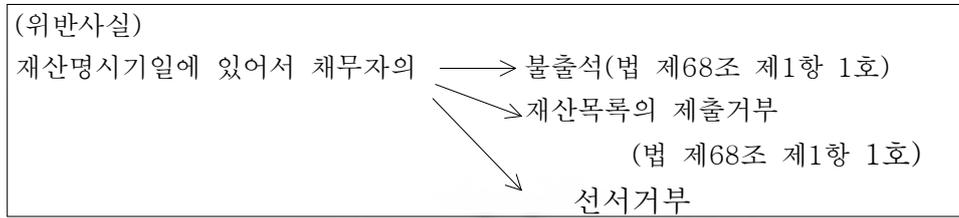
4. 명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한국의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감치 절차, 일본의 재산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료절차에 대체적인 흐름은 아래의 <그림-1>, <그림-2>와 같다.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자의 신병구속을 내용으로 하는 감치인가, 금전 지불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과료인가 하는 점이다.

1) 한국법의 감치제도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자의 불출석, 선서 거부, 재산목록 제출 거부 및 허위진술이라고 하는 재산명시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제재가 이루어졌고, 그 형사처벌의 내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였다(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2 제1항).이 점에 관하여 2002년 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불출석, 선서 거부, 재산목록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이 아닌 감치로 정비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각호의 의무위반이 있으면 재판소가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제재를 하지만, 감치결정 후나 심지어는 감치집행 중에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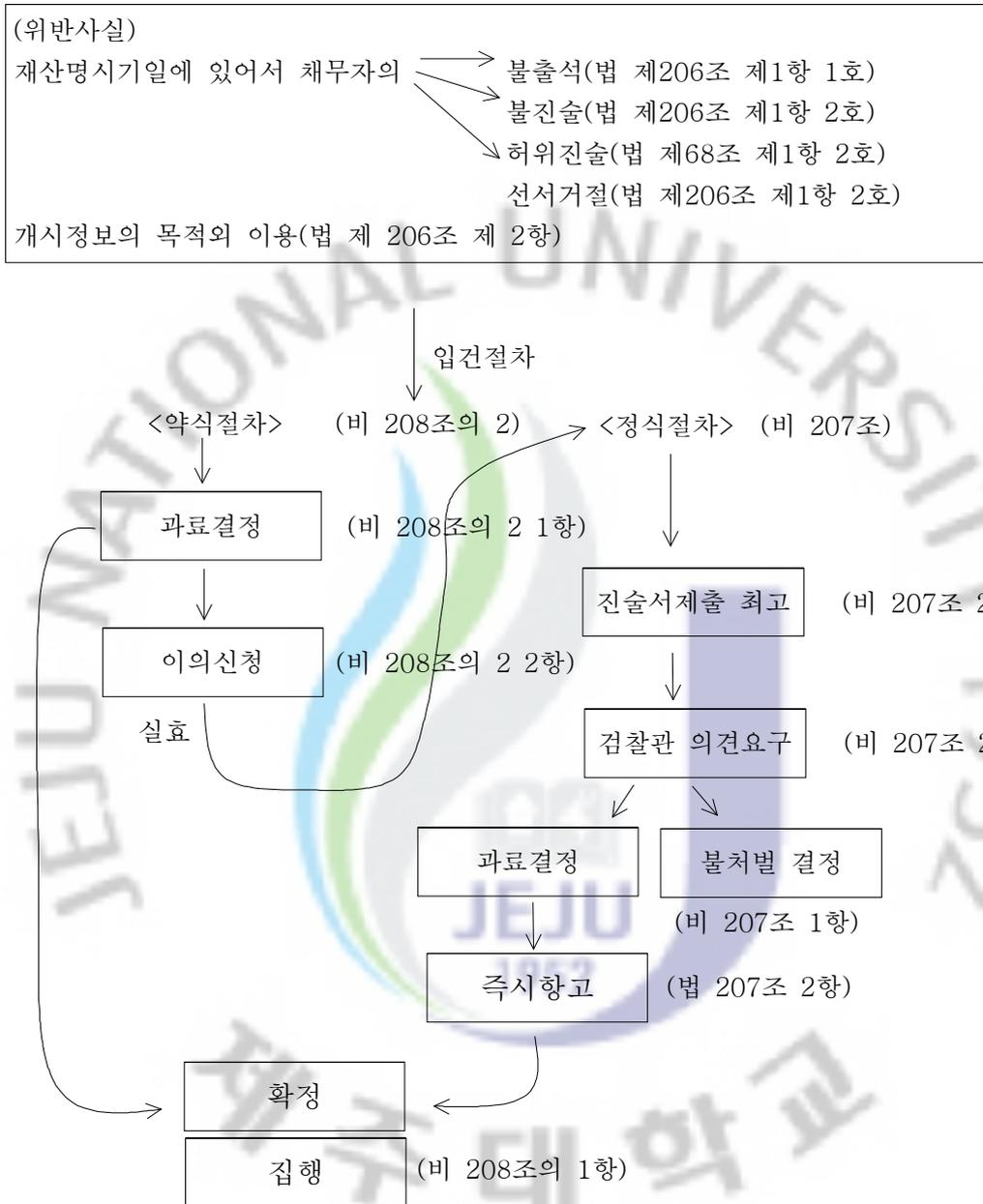
<그림 1>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감치절차(한국)



채무자의 허위재산 목록 제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8조 9항)

출처 : 今井輝幸(이마이 테루유키), “일본의 재산개시절차”, 『법조』 제54권 제9호, 2005, 257면.

<그림 2> 일본의 재산개시의무위반자 등에 대한 과료절차
(법-일본민사집행, 비-일본 비송사건수속법)



출처 :今井輝幸(이마이 테루유키), 전계논문, 258면.

이로써 재산명시의무의 이행 또는 채무변제와 석방을 제후시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사집행절차상의 의무위반이 즉시 형사범죄가 된다고 하는 불필요한 경우를 피하고자 한 것이다. 위 개정에 의하여 재산명시의무 위반

자에 대한 제재가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하는 형사처벌로부터 감치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제재의 수위가 감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개정 전의 형사처벌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던 현실과 개정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각호 위반자에 대하여 대부분이 감치재판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감치재판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례 중 과반수가 감치결정에 이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절차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의 형사처벌은 재산명시절차와는 별개의 형사재판절차에서 이루어져 그 형사재판절차의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형사재판절차의 귀추에 영향을 미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일은 없었지만, 감치제도에 있어서는 감치재판 개시결정 후에는 물론 감치결정 후, 심지어는 감치집행 중이더라도 채무자는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석방하게 되어 감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보호에도 상당한 배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도 “재산명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채무자의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위반 시에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재산명시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과거의 질서위반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현재의 이행확보를 위한 예방적 강제처분으로서 감치의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이다”¹⁰⁾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채무자의 석방과 채무자의 재산명시의무이행 또는 채무변제와의 제휴는 감치제도의 근간이라고 하여도 좋으며, 재산명시절차의 취지를 잘 살린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감치제도의 문제점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이 준용하고 있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의해 3개월 이내에 감치결정이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상 감치집행장의 유효기간은 최장 3개월간이 되는 바, 감치결정의 집행율이 낮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10)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해설』, 2002, 63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집행율이 낮은 이유로서는 재산명시절차 진행 중에 소재불명이 되는 채무자가 많은 점, 경찰관 대신 집행에 임할 법원 직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 법원의 집행명령에 대해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집행을 실시하지 않은 점, 채무자가 소재불명이 되었을 경우에 지명수배를 하는 등의 방법이 없는 점을 들 수 있고, 현행법 아래에서 집행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을 위한 법원과 경찰과의 공조태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채무자는 3개월간 감치결정의 집행을 면하면 집행을 받지 않게 되니 이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치결정의 집행율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민사집행규칙이 준용하는 위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있으며, 입법론으로 위 규정을 개정해 집행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위 규정을 폐지해 집행기간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된다. 감치에 관한 집행장의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사집행규칙」 또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개정에 의해 감치집행장의 집행율이 어느 정도 향상될지를 분석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곤란할 것이다.

3) 한계점

법 개정의 의하여 채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제재로서 감치를 채용한 이유 중의 하나는 형사처벌이 민사상의 재산명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었으므로,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과할 적극적인 이유는 없다.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악질성이 명백히 드러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명시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대로 기능을 해 오지 않았던 실태, 검찰의 과도한 사무부담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 보면 한국법이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에 대하여도 불출석 등 다른 경우와 같은 제재, 즉 감치의 제재를 과하는 것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일본법의 과료제도

일본법에서는, 재산개시절차 실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개시기일에 출두해 그 재산에 관하여 진술할 의무를 지고, 불출두, 선서 거절, 진술 거절, 허위진술을 한 채무자(재산개시 의무위반자)는 30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해진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 점에 관하여, 금전의 지불을 거절하는 채무자에게 30만 엔 이하의 지불의무를 추가해도 유효한 이행강제조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재산개시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는 형사처벌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악질적인 금융업자에 의한 가혹한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이 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염려하는 의견이 유력해져 결국 형사처벌의 도입은 보류되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재산개시절차에 관한 사례가 한층 더 집중되어, 악질적인 금융업자에 의한 남용의 위험성이 낮으며 과료의 제재로는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감치제도 등을 참고로 채무자의 신병구속을 수반하는 제재를 과하는 법 개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5. 정보의 목적외이용에 대한 제재

일본법에서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민사집행법 제17조) 중 신청인, 신청자격을 가지는 다른 채권자, 채무자 및 개시의무자로 한정하여 재산목록을 포함한 재산개시기일의 기록열람·등사가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01조). 그리고 재산개시절차 및 그 기록에 의하여 얻어진 채무자의 재산 또는 채무에 관한 정보를 채권행사의 본래의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02조),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3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해진다(동법 제206조 제2항). 이에 대해 한국법에서는, 신청채권자 이외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자도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67조), 이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제재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2002년 개정에 이르는 논의과정이나 그 후에 나타난 법원행정처의 견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치제도는 채권자의 권리실현과 채무자의 사생활 보호를 적절히 조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기에 감치라고 하는 신병구

속을 수반하는 제재 아래에서 명시된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한 채권자가, 거기서 얻은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재조치 필요성이 발생한다. 한국에서도 재산목록의 열람 등에 의하여 얻은 정보에 관하여는 그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한국법은 일본법에는 없는 재산조회제도(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고, 당해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회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제도, 민사집행법 제 74조 내지 제77조)를 2002년 개정으로 창설하였는바, 재산조회 결과의 결과를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규정이 있다(민사집행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재산조회제도는 금융기관 등이 재산에 관한 정보를 회답하는 것이고,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 자신이 자기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집행권원 있는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분모를 가지므로 재산목록 열람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향후의 동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도 향후의 동향에 따라서는 재산개시의무위반에 대하여 금전 지불의무 이외의 제재가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고, 한국에서도 2002년 개정을 위한 논의단계에서 종래의 형사처벌의 제재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인식 아래 미리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내게 하고 재산명시의무위반의 경우 이를 몰수하는 등 일본의 과료제도와는 다르지만 채무자에게 금전적인 면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 등이 실제로 제창되기도 하였으므로 가까운 시일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재산명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의 동향에 대하여 주위를 기울이는 것은 양국 재산명시절차의 운용과 발전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제 3 절 독일의 재산명시제도

1. 의의

독일 강제집행법상의 선서보증은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의하여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재산의 상세한 내역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이 정확하고 완전함을 선서에 갈음하여 조서에 보증하게 하는 것(독일 민사소송법 제807조)과 특정동산의 인도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서에 갈음하여 그 동산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그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뜻을 조서에 보증하게 하는 것(독일민사소송법 제883조)을 말한다. 채무자가 선서보증을 위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이 선서에 갈음한 보증을 거부한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구금할 수 있으며(독일민사소송법 제901조), 구금명령을 받은 자 또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선서에 갈음한 보증을 한 채무자는 채무자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인의 열람과 조회에 공하여진다(독일민사소송법 제915조).

이 절차는 애초에는 법관의 면전에서 채무자가 선서를 하는 것이었으나, 1970년7월부터 시행된 사법보좌관법에 의하여 사법보좌관이 강제집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재하게 되면서 이 절차도 사법보좌관의 업무가 됨에 따라 선서에 대신하여 재산목록 등이 진실하다는 진술을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한 보증을 하는 취지의 진술을 덧붙여 조서에 기재하게 하면서 명칭을 선서에 갈음한 보증으로 바꾼 것이다. 다만, 구금명령은 채무자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사법보좌관이 아닌 법관에 의하여 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선서보증제도는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독일의 실무에서는 금전채권의 선서보증이 주로 이용되고 특정물 인도채권의 선서보증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강제집행법도 특정물 인도채권에 관하여는 재산명시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2. 선서보증절차의 개시

1) 개시

선서보증절차는 채권자가 선서보증기일의 지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개시된다(독일민사소송법 제900조 제1항 1문). 채권자는 이 신청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이 신청에는 집행문이나 기타 채무자의 선서보증의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독일민사소송법 제900조 제1항 2문).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이 선서보증을 거절할 것에 대비하여 선서보증신청과 동시에 미리 구금신청을 할 수 있다.¹¹⁾

2) 요건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법보좌관은 기일지정신청의 적법 여부, 기일지정의 요건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선서보증기일을 지정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신청을 기각한다. 사법보좌관의 기일지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기일지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기일지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집행권원의 존재 및 송달, 소송능력의 존재 등 강제집행개시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으나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였거나,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어도 채권을 만족시키기엔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를 소명하여야 한다(독일민사소송법 제807조 제1항). 셋째, 채무자가 선서보증을 하고 그 보증을 한 사실이 채무자명부에 등재된 후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보증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그 후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채무자의 그때까지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사실이 소명된 때에는 보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독일민사소송법 제903조).

3) 통지·송달

사법보좌관은 위 선서보증의 요건이 충족되고 집행정지 등의 장애사유가 존재

11) 이영준, “독일의 선서보증제도의 이론과 실제”, 『재판자료』 제36집, 법원행정처, 1987, 250면.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보증기일을 지정한다. 선서보증기일이 정해지면 채무자 본인을 직권으로 송달의 방식에 의해 소환하고,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독일민사소송법 제900조). 선서보증은 법정에서 행하여지지만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멀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정 외에서도 행하여 질 수 있다(독일민사소송법 제479조).

3. 선서보증기일의 실시

1) 진행

선서보증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구두변론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보좌관은 채무자에 대해 선서보증의 요건 등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연기신청의 유무를 질문하고, 이의 및 연기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의 절차를 행하는데, 보증의 절차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재산에 관한 상세한 내역과 그 소유재산을 일정기간 내에 일정범위의 친인척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내역, 일정기간 내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급부한 내역 등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사법보좌관은 제출된 재산목록에 기초하여 그 진위를 확인한 후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채무자에게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을 하게 한다(독일민사소송법 제807조).

2) 연기

채무자가 선서보증기일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사법보좌관은 3개월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기 후의 새로운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6주간 연기할 수 있다(독일민사소송법 제900조 제3항). 이와는 달리 채무자의 개인적 용무,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연기신청은 대부분 기각된다.

3) 이의신청

채무자는 선서보증기일에 선서보증의 요건의 흠결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독일민사소송법 제900조 제4항). 실제법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는 이의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만 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은 채무자가 명시한 이의사유를 심리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선서보증을 하여야 한다.

4) 구금

채무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선서보증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보증을 거부한 경우, 채권자의 구금신청이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지체 없이 기록을 법관에게 이송함으로써 구금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5) 열람·말소

누구든지 채무자 명부를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915조 3항). 채무자명부는 채권의 만족이 증명된 때 또는 등록된 면도 종결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한다(독일민사소송법 제915조 제2항).

제 4 절 한국과 독일의 재산명시제도의 비교

상기에서 독일의 선서보증제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의 재산명시절차는 독일의 선서보증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나 절차개시의 요건, 절차의 운영 주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에서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받아들였다. 다음에서 우리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의 하겠지만 독일의 선서보증제도와 우리의 재산명시절차가 큰 틀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절차의 주재자

독일의 선서보증제도는 구금명령을 제외하고는 선서보증기일의 개시, 지정, 운영 등 제반 절차가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하게 됨에 따라 채무자가 사법보좌관 앞에서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의 재산명시절차는 제반 절차가 법관의 업무에 속하여 채무자가 법관 앞에서 재산명시선서를 하도록 하였다.

2. 대상

독일에서는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뿐만 아니라 동산인도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포함하여 선서보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금전채권에 관해서만 명시절차의 이용을 인정한다.

3. 요건

독일의 선서보증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하여 선서보증을 허용함에 반하여, 우리의 재산명시절차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강제집행의 부주효를 요건으로 삼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제재

독일의 선서보증은 선서보증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구금신청에 따라 법관이 구금명령을 발하고 그 집행은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관할지 법원의 집행관이 행함에 반하여 우리의 재산명시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함으로써 감치절차가 개시된다.

5. 등재

독일에서는 선서보증을 한 채무자 또는 보증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보증을 거부하여 구금명령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당연히(별도의 등재신청이 없어도) 채무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채무자명부의 등재와 선서보증절차는 서로 독립적인 절차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법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며 명시절차가 반드시 선행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제 4 장 현행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의 내용

제 1 절 재산명시제도

1.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재산명시 절차라 함은 채무자가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로 민사집행법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에 규정되어 있다.

재산명시절차는 첫째 채무자가 선서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되고 둘째, 채무자는 자기재산의 처분내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셋째, 자기재산이 공개되는 것,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자진이행 하도록 유도하여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게 한다.¹²⁾

재산명시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관계에 대하여, 재산명시절차는 강제집행 절차의 보조수단이고 그 부수절차라는 견해,¹³⁾ 강제집행준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중간단계라는 견해가 있으나¹⁴⁾ 재산명시절차가 비록 금전채권의 직접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채무의 간접강제를 그 주된 기능의 하나로 삼고 있고,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함에 있어 강제집행의 부주효를 그 신청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거나 재산명시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가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점, 재산명시절차가 민사집행의 강제집행의 총칙부분이 아니고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부분에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강제집행절차의 보조수단이나 부수적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로 풀이된다.¹⁵⁾

재산명시절차는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의 결정을 함으로서 개시되고, 절차개시를 위하여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요건의 구비서류를 필요로 한다(민사집행법 제 61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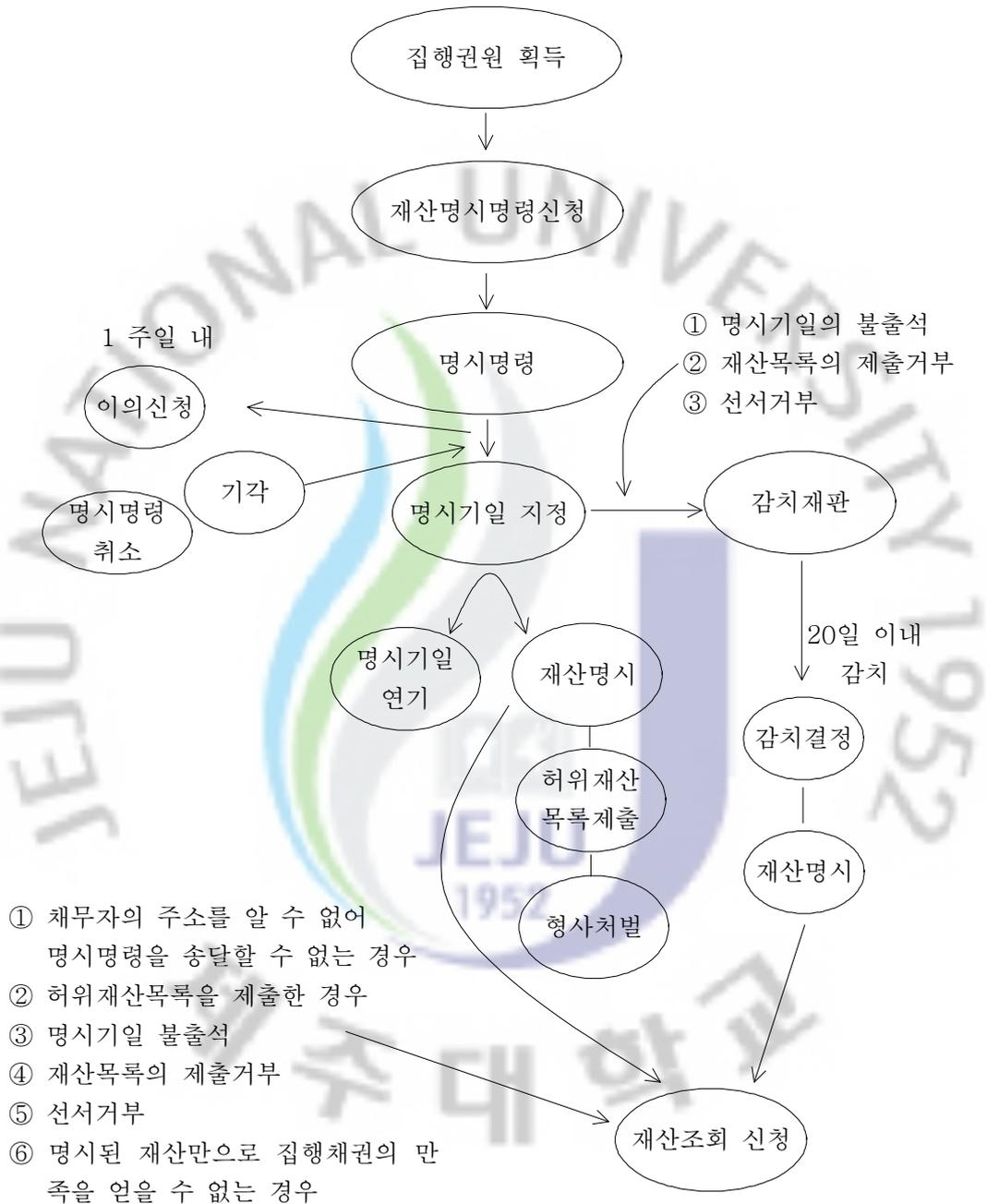
12) 진성규, “재산명시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사법논집』 제21집, 1990, 343면.

13) 정동윤, “개정민사소송법의 재산관계명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법조』 제40권 제1호, 1991, 150면.

14) 남기정, “채무자의 재산명시절차”, 『법조』 제39권 제12호, 1990, 127면.

15) 김종백, “재산명시제도와 채무불이행자명부”, 『채관자료』 제71집, 법원행정처, 1996, 276면; 진성규, 전 계논문, 355면.

(그림 3) 재산명시절차



출처 : 경영법무편집부, 『경영법무』 통권 133호, 한국경영법무연구소, 2007, 43면.

2. 요건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의 결정을 함에는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2002년 1월 26일 민사집행이 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제2항은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 등의 조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를 열거하고 있었다.¹⁶⁾

그러나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강제집행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재산명시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고,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누구나 재산명시절차를 통하여 제출된 재산목록을 열람 할 수 있는 점(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제7항), 재산명시제도의 입법취지가 불성실한 채무불이행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있다는 점 등에서 구 민사소송법이 열거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만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없다.¹⁷⁾

그리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범위를 금전채권에 관한 모든 집행권원으로 확장하면서,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집행권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민사집행법 제61조).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권원을 제외한 이유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부 배상명령과 같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집행권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집행권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시 감치에까지 이를 수 있는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지나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우려

16) 이 열거에 의미에 관하여 ① 한정적 열거설(집행권원의 종류를 특히 한정하여 열거한 것으로 보는 견해), ② 단순예시설(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 중 대표적인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③ 채무명의 성질설(한정적인 열거라고는 할 수 없으나 집행권원의 성질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었고, 판례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이 제524조의 2의 1항 소정의 집행권원에 포함된다고 판시(대결 1995.4.18 94마 2190)함으로써 적어도 이 제도가 한정적 열거설과 같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표명하였다.

17)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해설』, 2002, 46면.

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⁸⁾

따라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기만 하면, 확정판결, 화해,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확정판결·심판·조정조서는 물론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과 집행증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 등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¹⁹⁾

2)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개시의 요건(민사집행법 제39조 내지 제41조)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즉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권원이 이미 송달되었거나 집행개시와 동시에 송달된 것을 요하며, 승계집행문 등의 경우에는 그 집행문이나 증명서가 집행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이행이 일정한 시일의 도래에 달린 때에는 그 시일이 만료되어야 하며,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달린 때에는 그 담보제공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상환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대상청구의 경우는 본래의 채무의 집행불능이 각각 증명되어야 한다.²⁰⁾ 이 요건의 존재를 소명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1조 2항).

3)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그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소송능력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인 채무자 본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절차는 채무자 본인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기일에의 출석, 재산목록의 작성, 제출 선서 등은 법정 대리

1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 2003, 305면.

1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 2003, 304면.

20)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 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382면.

인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소송무능력자인 채무자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명시절차를 강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즉, 특별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같은 정도로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가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잘 알아 정확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특별대리인에게 선서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의무불이행의 경우 처벌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²¹⁾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법 제62조 2항).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함은 집행의 대상이 될 채무자의 재산의 소재가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때 또는 채권자가 약간의 노력만 하면 집행대상재산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이 명백한 때를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채무자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 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채무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의 명시신청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명시선서를 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모든 채권자는 그 재산목록을 열람·등사를 하여 집행 대상재산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재산발견이 용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선행의 명시절차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이 후 채무자가 새로이 재산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채권자의 소명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명시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²²⁾

그러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발견이 용이하다거나,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²³⁾ 다만,

21) 진성규, 전제논문, 343면.

22) 진성규, 전제논문, 359면.

23) 남기정, 전제논문, 128면.

발견이 용이한 그 일부 재산으로 명시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데 충분하다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만 채산명시신청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것이 기록상 분명하거나 그에 대한 채무자의 소명이 없는 한 다른 요건이 구비된 이상 집행법원으로서 재산명령을 발하여야 한다.²⁴⁾

5)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법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2에는 ‘금전채권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위 문구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재산명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무의 불이행은 재산명시명령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해석한다.²⁵⁾

이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극적 요건으로,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서 특별히 이 요건을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채무자가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서 그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²⁶⁾

채권자는 명시신청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 외 또는 재판상으로 이행 청구를 할 필요는 없고, 명시신청 전에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명시신청이 가능하다. 이점은 독일의 선서보증제도와 다른 점 중의 하나이다.

3. 재산명시명령의 신청과 관할

1) 신청의 방식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있어야 발할 수 있기에 재산명시신

24) 김종백, 전제논문, 306면.

25)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Ⅱ』, 2003, 384면;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 2003, 306면;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4, 222면.

2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 2003, 306면.

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 그 서면에는 첫째,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둘째, 집행권원의 표시. 셋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 채무액. 넷째, 신청 취지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채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을 함에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 및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법 39조, 40조, 41조)를 첨부하여야 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대리인이 있거나 대표자에 의하여 대표되는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관할

재산명시 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이 된다(민사소송규칙 제6조).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고(민사집행법 제21조),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임의 관할로 보아야 한다.

구 민사소송법이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로 규정하고 있어서(구 민사소송법 제524의 제2, 3항) 시·군법원이 재산명시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군법원은 재산명시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법원 조직법 제34조).

관할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나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재산명시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절차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관할법원은 관할 있는 법원에 재산명시절차가 행하여진 사실을 통지하고 재산목록의 부분을 송부 할 필요가 있다.²⁷⁾

27) 이영준, 전제논문, 662면.

4. 신청에 대한 재판

1) 심리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재판하여야 하지만(법 제62조 제3항),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권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²⁸⁾

이에 대하여 이 규정이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정한 취지로 이해하여 채무자의 심문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²⁹⁾ 재산명시명령이 집행전 처분임을 들어 민사집행규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가 있다. 수인의 채권자로부터 각각의 재산명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재판할 수 있다.

2) 재산명시명령

(1)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이 명령을 재산명시 신청을 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4항). 송달은 반드시 정본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의 의하여 등본으로도 가능하다.³⁰⁾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민법 제174조)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고,³¹⁾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단계의 절차에 불과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³²⁾

그러나 민법개정안은 재산명시 신청은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요건에 해당하는 관계문서를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압류요건과 다를 바 없으므로 압류의

2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 2003, 308면.

29)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II』, 2003, 390면.

30) 대결 2003. 10. 14. 2003마1144

31) 대판 1992. 2. 11. 91다4118

32) 대판 2001. 5. 29. 2000다32161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였다.³³⁾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에는 첫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민사집행법 68조에 규정된 감치 및 벌칙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법 제62조 4항). 둘째,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았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9항, 민사소송법 제185조 2항, 민사집행규칙 26조).

(2)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 할 수는 없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교부송달로 함이 원칙일 것이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도 있다.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 채권자가 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명령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7항)

(3)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변경신고가 없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에 송달받았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발송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9항). 이는 재산명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명시기일 출석요구가 송달불능 된 경우 명시절차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재산명시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나, 한편 명시기일의 소환이 발송송달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예측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명시기일에 불출석은 집행절차상의 불이익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감치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다. 이에 규칙 제26조에서는 재산명시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 할 때에는 법 제62조 제9항의 취지를 함께 고지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33) 민법개정안 제168조 제2호

3) 재산명시신청의 기각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집행정지, 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재산명시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각하는 예가 없으며,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게 하는 사유들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한 이때 실질적으로 검토가 된다.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되고 (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2항), 채권자는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8항).

5.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발함에 있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판단의 기초로 삼는 대신 채무자에게 허용된 불복방법이다.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는 견해,³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일종이라고 보아 민사집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³⁵⁾가 있다.

2) 이의 사유

(1) 이의사유는 재산명시신청의 요건 흠결과 강제집행개시요건의 흠결을 주장

34) 진성규, 전제논문, 362면; 박두환, 『신강제집행법』, 고시계사, 1993, 244면.

35) 강대성, 『민사집행법』, 삼영사, 237면.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첫째, 채권자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것. 둘째, 채무의 내용이 금전채무가 아니라는 것. 셋째,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는 것. 넷째,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의 자격흠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에 흠결이 있다는 것 등이다.

(2)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

민사집행법 제49조 이하의 집행의 필수적 정지·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이 이의사유로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제4호(변제 또는 변제유예의 증서)의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긍정설³⁶⁾ 이 경우에는 집행을 속행할 정지할 뿐 이미 실시한 재산명시명령을 일시 유지하여야 하고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부정설³⁷⁾이 대립하고 있다. 긍정설을 취하게 되면 재산명시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판단도 보류하여야 하지만, 부정설을 취하게 되면 재산명시절차의 진행은 정지하되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절차는 그 자체 독립적인 강제집행절차의 하나로 집행정지·취소에 관한 위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된 경우 정지·취소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구태여 이를 이의사유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채무를 전부 이행한 변제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정지서류에 불과하지만 재산명시신청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의 변제가 신청요건을 흠결하게 하는 소극적 요건으로 해석되므로 이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채무를 전부 이행한 변제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의 소극

36) 강대성, 전게서, 236면.

37) 진성규, 전게논문, 363면; 박두환, 전게서, 1993, 244면.

적 요건의 흠결이 있게 되므로 재산명시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³⁸⁾

(3)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 즉 변제, 대물변제, 변제의 유예면제, 포기, 상계, 시효의 완성 등의 실체적 사유가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청구이의의 판결에 반영되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는 한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유효하고 그와 같은 집행채권의 소멸이 곧바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는 부정설³⁹⁾, 변제의 경우는 재산명시신청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의사유가 되지만 변제이외의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설,⁴⁰⁾ 청구이의사유 중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이의사유가 된다는 설⁴¹⁾이 대립하고 있다.

재산명시절차도 독립적인 강제집행절차의 하나이고 강제집행의 총칙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의사유는 절차법적 사유에 한정되고 실체법적인 사유는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의 완전변제는 재산명시신청의 소극적 요건으로 해석되므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이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명백한 사유 증명에 의한 사유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이의사유로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선행의 명시절차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명시선서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데 충분한 집행대상재산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한 때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⁴²⁾

3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 2003, 312면.

39) 박두환, 전제서, 244면.

4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 2003, 312면.

41) 김종백, 전제논문, 297~298면.

42) 진성규, 전제논문, 363면.

3)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1) 심리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문하여야 한다(필요적 심문, 민사집행법 제63조 제2항).

이의 신청에 대한 신문기일에는 재산명시기일과는 달리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해도 무방하다.⁴³⁾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의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재산명시명령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재산명시명령과는 별개의 독립된 신청사건인 것이다.

(2) 재산명시명령의 취소

심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 즉, 재산명시신청요건의 흠결이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3항). 재산명시명령의 취소결정은 신청인인 채무자와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취소결정은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므로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5항).

(3) 이의신청의 기각

심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4항). 신문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채무자의 불출석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예를 들면 채무자가 공무로 해외출장 중이거나 와병인 경우 등이다.⁴⁴⁾

43) 진성규, 전제논문, 364면.

44) 김종백, 전제논문, 301면.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은 신청인인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5항). 그러나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법원은 명시기일을 지정, 실시할 수 있다.

6.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1) 출석요구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게 하기 위하여 즉, 재산관계의 명시를 위한 기일(재산명시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2항). 명시기일에 채무자는 출석하여 스스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⁴⁵⁾

재산명시기일의 출석요구서에는 첫째, 채권자 및 채무자의 표시. 둘째, 재산목록에 기재 또는 명시할 사항과 범위. 셋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넷째, 후술하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와 벌칙의 개요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1항). 아울러 실무상으로는 일정한 양식의 재산목록과 그 작성요령 및 명시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첨부하여 함께 송달하고 있다. 채권자에게 명시기일을 통지하도록 한 것은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기일에의 출석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5) 진성규, 전제논문, 365면.

(2) 고지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등기우편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뒤 송달 장소를 바꾸고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9항,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89조).

(3) 기타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일과 명시기일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⁴⁶⁾

2) 재산명시기일에서의 절차

(1) 채무자의 출석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2항). 대리선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만 출석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⁴⁷⁾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그 기일이 연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명시기일을 열지 않고 감치재판절차로 넘어가지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3항),

4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I』, 2003, 317면.

4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 2003, 317면.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이 재산명시신청이 금융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고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채권자가 출석하는 예는 실질적으로 드물다. 채권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도 당사자사이의 임의이행에 관한 중재 내지는 조정을 할 기회를 갖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⁴⁸⁾

(2) 재산목록의 제출

재산명시기일에 명시하여야 할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의 현재의 책임재산

채무자 보유의 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을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본문). 기재하여야 할 재산의 종류와 범위는 민사집행 규칙 제28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도 포함된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0호).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 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 11. 29. 2007도 8153)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규정된 압류금지물과 법 제24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 민사집행법 외 특별법에 규정된 압류금지물도 같이 볼 것인가에 대하여,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채무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등을 논거로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⁴⁹⁾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물과 마찬가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압류금지물 또는 압류금지채권은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물과 마찬가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이하, 등기등)가 필요한

48) 김종백, 전제논문, 304면.

49) 진성규, 전제논문, 367면.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있는 것도 적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의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1호). 금전채권, 대체물인도청구권, 각종의 유체동산 등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3호, 동조 제2항 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9호). 어음·수표·주권·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3호).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인데도 미등기 또는 미등록 상태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4호,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② 채무자의 일정범위의 과거재산

i.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전 1년 이내’라 함은 채무자가 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의 날 이후를 의미하고,⁵⁰⁾ 그 양도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불문한다.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부동산 이외에 민사집행법의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선박, 중기, 자동차,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는 견해⁵¹⁾도 있으나 이는 문리해석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부동산만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⁵²⁾

ii.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 대하여 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유상양도(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2호) 1호와는 달리 양도의 상대방이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위 신분관계는 민법상의 개념으로 그 중 ‘배우자’는 재산목록 제출 당시의 배우자와 양도처분당시 배우자

50) 진성규, 전제논문, 368면.

51) 진성규, 전제논문, 367면.

52) 김종백, 전제논문, 305면.

었던 자를 모두 포함한다.⁵³⁾

iii.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3호)

‘재산상의 무상처분’이라함은 증여뿐만 아니라 타인의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한 것도 포함된다.⁵⁴⁾

그러나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된다. 의례적인 선물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iv. 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처분된 재산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양도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번호 등과 같은 그 거래 내역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1항)

위와 같이 과거의 재산처분상황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도피 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⁵⁵⁾

(3) 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채권증서, 보험증서 등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4항). 유의할 것은 위 명령은 채무자의 선서가 있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선서로서 명시절차는 종결되기 때문이다.

3) 기일의 진행 및 순서

(1) 공개

명시기일은 채무자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그 진실성에 대한 선서를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재산목록 기재사항의 진위를 확인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5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2003, 319면.

54) 김종백, 전제논문, 306면.

55)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07, 226면.

변론절차와 같이 재판공개 원칙을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재산목록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비공개로 진행함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⁵⁶⁾가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기일 진행의 편의상 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2) 보완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그 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이 형식적으로 명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불명확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4항). 즉시 보정이 불가능 할 때에는 기일을 속행 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속행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종료하고 감치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출석한 채권자는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채무자에게 질문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서 재산명시명령의 당부를 다툴 수는 없고, 변제할 수 있음을 주장하거나 집행 정지서류를 제출하여 기일의 연기를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왜냐하면, 재산명시명령의 당부는 이의신청으로서만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⁵⁷⁾

(3) 선서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구비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는 그 법정 대리인이, 법인이거나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서하여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선서의 절차 및 방식

56) 진성규, 전제논문, 370면.

57) 진성규, 전제논문, 370면.

에 관하여는 증인선서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담당 판사는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면 법 제68조 제9항, 제10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의 경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20조의 준용).

선서는 법 제65조 제2항의 후문에 정한 선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선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하게 한다(민사소송법 제321조 제3항 및 제4항의 준용).

(4) 거부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명시절차는 종결되고, 감치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실무상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예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감치절차로 넘어가는 대부분의 경우는 채무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한 것이다.

7. 재산명시기일의 연기

1) 통상적 연기

법원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5조의 준용). 재산명시기일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164조의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최초의 기일의 변경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반드시 기일 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현저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질병, 출장, 등과 같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재산목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때 등을 예상하여 볼 수 있다.⁵⁸⁾

현저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의 연기 또는 변경신청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58) 진성규, 전제논문, 371면.

것이나, 재산명시선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기일의 변경, 연기신청을 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⁵⁹⁾ 연기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다.

2) 변제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연기

(1) 변제자력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4항 전단). 재산명시절차의 궁극적 목적이 채권자의 채권만족에 있으므로 그 가능성에 대한 주장 및 소명이 있는 경우까지 절차를 강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채무는 채무의 일부가 아니라 채무전부를 가리키며, 소명이나 증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단순한 지급의사의 표시 또는 지급의 약속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고, 채무자가 현재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예컨대,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의 제시 또는 예금증서 등의 제시) 또는 장차 3개월 내에 변제자력이 생긴다는 사실(예컨대, 3개월 내에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거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변제자력이 있는 제3자의 지급보증서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⁶⁰⁾

(2) 연기신청

이 조항에 의한 연기는 채무자의 연기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채무자의 연기신청에 대하여 허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기 허부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⁶¹⁾ 연기불허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⁶²⁾

5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 2003, 322면.

60) 진성규, 전제논문, 372면.

6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 2003, 323면.

6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 2003, 323면.

(3) 신청방법

채무자가 변제 의사 및 변제 자력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연기 신청을 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재산명시기일의 연기신청은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여야 하고 명시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연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연기 신청 후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불출석으로 처리될 것이다. 다만, 변제 자력에 관한 소명 자료가 객관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연기가 가능 할 것이라고 본다.⁶³⁾

(4) 재연기

변제가능성을 소명함으로써 연기 또는 변경되어 새로이 지정된 명시기일에서 채무자가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안에서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4항 후단). 연기신청, 그에 대한 재판, 불복의 허용 여부 등은 상기의 최초의 기일의 경우와 같다. 채무자가 새로운 기일에서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여 다시 연기를 한 다음에는 다시 3차로 연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⁶⁴⁾

8. 재산목록의 정정·보완

1) 채무자에 의한 정정

(1) 의의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명시선서를 하게 되면 재산명시절차는 일단 종료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명시선서를 한 뒤라도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63) 김종백, 전제논문, 312면.

6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 2003, 323면.

(민사집행법 제66조 제1항). 본조는 민사집행법 제정 시 신설된 것이다.

(2) 신청 및 재판

재산목록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신청은 민사집행의 신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법 제23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61조가 준용되는 결과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는 견해⁶⁵⁾가 있으나 재산목록의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을 밝히고 이를 정정하는 방법은 재산목록의 작성 및 제출방식에 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⁶⁶⁾

채무자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허부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허부의 재판에서는 채무자가 정정을 신청한 내용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의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을 정정하는 것인지 그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한다.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은 정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⁶⁷⁾

허부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민사집행법 66조 제3항),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나 채권자들을 심문할 수 있다.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송달하면 되지만 신청을 인용한 결정은 채권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각 즉시 항고할 수 있다(민사 집행법 제66조 제2항).

(3) 정정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채무자는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재산목록을 정정한다. 정정은 이미 제출된 재산목록에 직접 가필, 정정하고 채무자가 정정인을 날인하는 방법, 정정한 내용을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미 제출된 재산목록에 덧붙이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법원이 정정을 허가하는 경우 새로운 재산명시기일을 열어 채무자로 하여금 정정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

65)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Ⅱ』, 2003, 413면.

6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 2003, 323면.

67)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Ⅱ』, 2003, 412면.

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정정은 단순히 형식적인 흠을 바로잡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⁶⁸⁾

2) 법원의 보완명령

법원은 명시선서를 시행한 후에도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4항),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채권자는 법원에 직권발동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재산목록의 보완을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 예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위 벌금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감치의 제재를 가하게 되나, 일단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성에 대하여 선서한 후에는 그 재산목록 기재사항이 진실한 것인지 거짓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만이 문제될 뿐이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였다.

9.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7조).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다소 좁게 해석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한정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종류를 불문하고 넓게 해석하여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68)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II』, 2003, 413면.

있는 채권자인 이상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⁹⁾

10. 집행정지의 취소

1) 재산명시의 취소

재산명시 절차도 강제집행 절차의 일종이므로 집행의 정지,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재산명시명령 발령 전에 법 제49조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재산명시명령 발령 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제4호의 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 또는 재산명시 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명시기일을 지정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절차의 속행을 정지하여야 한다.⁷⁰⁾

다만,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4호의 서류 중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변제증서를 첨부하여 명시명령에 대한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함은 앞서본 바와 같다.

2) 종료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하면 재산명시절차는 일단 종료되므로 그 후에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어도 집행정지가 있을 수 없으나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절한 경우에는 감치가 이어지므로 재산명시절차는 종료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재산명시기일 실시 후 감치결정 전에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후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 감치결정을 할 수 없고, 그 서류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나아가 재산명시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69) 진성규, 전제논문, 373면.

7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 2003, 326면.

11.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1) 감치

(1) 의의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이는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는, 집행법원의 결정으로 의무불이행자를 일정기간 구금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다.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제8항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재산명시절차에서의 모든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었는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검사의 기소가 필요한 형벌에 의존함으로써 첫째, 재산명시 절차의 민사적 성격을 감소시키고 둘째, 절차지연과 처벌의 예측 곤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서의 효과를 약화시키며 셋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되어 간접적으로는 강제적 의미도 약화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⁷¹⁾

그리하여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재산명시의무의 이행강제와 직접 관계가 없고, 증거자료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통하여 사후에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짓의 재산목록 작성에 대하여는 수사 및 소추와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하였고(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각호와 같은 채무자의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과하는 대신 그 위반만으로 즉시 법

71)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해설』, 2002, 59면.

원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명하되,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를 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하도록 함으로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채무변제와 석방을 연계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도 높이는 한편 민사집행절차상의 의무위반이 바로 형사범죄로 되는 이례적인 모습도 피하도록 하였다.⁷²⁾

2) 감치의 요건

(1) 감치대상자

감치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로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이다.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할 의무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감치재판을 받을 대상자는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 된다. 또한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법인 등을 위하여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할 의무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 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감치재판을 받게 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2항).

(2) 재산명시의무의 발생

감치는 재산명시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강제수단이므로 그 의무발생에 관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즉, 재산명시명령이 발령되고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을 것, 재산명시기일에의 출석요구서가 적법하게 실시되었을 것을 요한다.⁷³⁾

(3) 채무자의 위반행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

72)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해설』, 2002, 60면.

73)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II』, 2003, 418면.

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채무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정당한 사유’는 채무자에게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사유로 들고 있는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에 준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나, 교통기관의 두절, 천재지변 등으로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산목록을 제때에 작성·제출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불출석한 경우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⁷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한 보정명령이나 참고자료 제출명령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의 흠이 중대함에도 보정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인 “재산목록의 제출거부”로서 감치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절차

(1) 관할법원

감치재판은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1항).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감치재판은 결국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성질상 전속관할이다.

(2) 감치재판의 개시결정

7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2003, 329면.

①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결정에 따라 개시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 전문). 감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치재판의 개시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⁷⁵⁾ 채권자의 감치재판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② 감치재판개시의 전제가 되는 감치사유의 발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 명시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감치재판기일에 주로 심리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주로 감치사유 중 “명시기일 불출석”의 경우 명시기일에 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⁷⁶⁾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집행채무의 존부나 내용, 채무자의 변제의사나 능력 변제 전망 등 실체적 요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③ 감치재판개시결정의 시기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 후문).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족하고 그 때까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감치재판개시결정은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에게 말로 고지하고 조서에 기재하거나, 기일 외에서 감치재판개시결정서를 작성하여 불출석한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⑤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4항) 감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일종의 중간재판에 해당되는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하지

75)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II』, 2003, 420면.

7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 2003, 33면.

못하도록 한 것이다.

(3) 감치재판기일의 절차

① 채무자의 출석

법원이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치재판기일을 열고 채무자를 출석하게 하여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3항). 채무자의 소환은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거나 감치재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꾸고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 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 62조 제9항,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89조).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명시기일에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하고 이어서 곧바로 감치재판기일을 여는 것도 가능하다.

감치재판기일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출석 없이는 열 수 없지만,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때 또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채무자의 출석 없이도 기일을 열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연기할 필요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채무자가 멀지 않은 기일까지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기일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제가능성에 관한 소명의 정도를 보아 감치재판기일의 연기를 허용하는 운영도 고려해 봄직하다.

② 심리절차

감치재판기일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출석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참고인 등을 심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채무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

채무자가 감치 될 경우 채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감치재판의 집행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통지받을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하여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불처벌결정

①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서의 심리결과 첫째, 채무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둘째,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셋째,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3항).

② 감치재판기일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함으로써 불처벌결정을 한 때에는 새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 그 재산명시기일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하여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다시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③“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감치의 사유는 있지만 감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예를 들어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이 다시 재산명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감치재판절차 개시 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경우와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채무자가 고령, 질병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의 집행채무 액수나 채무자의 변제 의사·능력, 변제의 전망 등의 실체적 요소에 비추어 감치에 처하는 것이 특히 가혹하게 인정되는 경우)등이 해당 할 것이다.⁷⁷⁾

④ 불처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4항).

(5) 감치결정

①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또한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감치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

② 감치결정은 가능한 한 감치사유의 심리를 종료한 후 결정의 선고를 위한 별도기일을 지정함이 없이 그 기일에 바로 선고하는 것이 집행절차나 업무부담 면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특히 채무자가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여 감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따른 준비를 미리 하여 둘 필요가 있다. 즉 감치결정서, 집행장, 집행명령서 등의 양식을 미리 준비하여 감치결정을 하는 경우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⁷⁷⁾

③ 감치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전문). 감치결정의 재판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거 기타 채무자 본인을 특정 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결정의 주문 및 감치사유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재판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 재판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7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2003, 335면.

7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2003, 337면.

④ 감치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감치사유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후문), 채무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2항).

4)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1) 즉시항고

채무자는 감치에 처하는 감치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4항)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지만(민사집행법 제 15조 제6항 본문),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감치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단서).

(2) 즉시항고기간

즉시항고기간은 감치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이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채무자가 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 18조).

감치결정은 선고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불복기간은 감치결정이 채무자에게 실제로 고지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감치결정의 선고시에 출석하였다면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

판법원에 즉시 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그 회복청구는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9조).

(3)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

감치결정을 한 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 다만 재산명시사건의 기록은 분리하여 감치사건의 기록만을 송부하여야 한다. 즉시항고가 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감치결정이 집행되므로 그 집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

5) 감치결정의 집행

(1) 집행명령과 집행장의 발부

감치결정은 그 재판을 한 법관의 집행명령에 따라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이 채무자를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법관의 집행명령은 감치시설의 장에게 감치결정을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집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감치시설의 장에게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채무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형집행 중에 있어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집행명령서 외에 별도로 집행장을 발부하여 채무자를 구인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집행장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거 기타 채

무자의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항), 집행장의 유효기간은 감치결정의 집행기간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감치시설에의 구인 및 집행통보

집행장과 집행명령서를 교부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은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감치시설의 장에게 법관의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법관은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즉시 감치시설에 구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경찰서유치장 등을 지정하여 채무자를 일시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일시 유치한 시설의 장은 그 유치를 종료한 때에는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하며, 일시 유치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법관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지체 없이 채무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여야 한다. 일시유치기간은 감치기간에 삽입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내지 제6항).

감치시설의 장은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유치한 때에는 수용통보서에 의하여 바로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5항).

(3) 집행통보에 따른 법원의 통지

재판장은 감치시설의 장으로부터 채무자가 감치시설에 유치된 사실을 통보받으면 그 때부터 3일안에 감치되는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감치집행의 일시·장소·감치결정의 이유와 보조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8항). 실무운영에 있어서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감치시설의 장으로부터 위 통보를 받는 즉시, 감치시설의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여 채무자가 통지를 원하

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전화번호 등)를 확인하여 기록의 적당한 부분(통보
서 등) 여백에 그 취지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전화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에게 먼저 통지한 후 정식의 서면(감치집행통지서)을 통한 통지절차를 밟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⁷⁹⁾

(4) 집행의 정지 및 종료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
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민사집
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6
항).

감치시설의 장은 감치재판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석방통보서에 의하여 바로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7항).

6) 감치결정의 취소

(1) 채무자의 재산명시의무 이행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 이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
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7항 전문). 이와
같이 실시된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한 때에는 법
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
행법 제68조 제6항).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를 석방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
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6항), 위와 같이
명시기일 통지를 생략한 채권자에게도 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 68조 제7항 후문).

7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2003, 344면.

(2) 변제증명서면의 제출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서면으로 명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68조 제6항,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7항), 이 사실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7항 후문).

7) 집행의 정지·취소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와 변제증서를 제외한 제4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감치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 집행을 민사집행법 제51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정지하여야 할 것이다.⁸⁰⁾

12. 재산명시의 재신청

1)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69조). 이의신청에 의하여 명시명령이 취소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⁸¹⁾ 재산명시절차가 그 신청의 취하로 종료된 때에는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다.

2) 재산명시기일이 실시되었으나 채무자의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의 거부로 종결된 경우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재산명시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그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신청 할 수 있다는 견해⁸²⁾와

8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2003, 349면.

81) 김종백, 전제논문, 319면.

8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2003, 350면.

채무자를 감치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⁸³⁾ 대립하고 있으나, 위 명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감치결정을 하더라도 감치집행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미집행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재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에는 재신청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3)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여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절차의 종결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 파악이라는 재산명시제도의 목적은 일단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원칙적으로 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도 채무자의 재산목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⁸⁴⁾

그러나 명시선서 후에 채무자가 압류할 재산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거나 종전에 제출된 재산목록이 멸실되어 재열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채권자는 물론 동일 채권자도 다시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제 2 절 재산조회제도

1.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재산조회라 함은 민사집행법이 새로 도입한 것으로서, 2002년 6월 28일 제정되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1차 적으로는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공개 제출케 하는 절차에 붙였으나 책임재산의 파악에 실패하였을 경우, 제2차 적으로 추

83)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II』, 2003, 430면.

84) 진성규, 전제논문, 375면.

가적, 보충적인 의미에서 전산망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로서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로 집행할 재산을 찾는 절차인데 반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법원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이다. 이는 명시선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악성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는 데서 명시선서제도보다 그 속행절차인 재산조회제도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산조회제도의 실질적인 민생해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2005년 개정 법률에서 채무자가 도주한 때에도 재산조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는 독일을 포함한 해외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신법이 마련한 창의적인 제도이며 대법원규칙인 재산조회규칙에서 그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하며⁸⁵⁾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당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 신청대상과 대상기관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채적재산권, 자동차, 중기, 금융자산 등에 한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부동산 등기부 조회에 한해 2년간 소급조회가 허용되며 나머지 재산조회는 조회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현재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회만 허용된다. 재산조회 대상기관은 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와 건설교통부이며 지적소유권은 특허청, 자동차나 중기는 광역시. 도이며, 금융자산은 금융기관과 그 연합회, 단체 등이다.

85)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3. 신청요건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선서 거부 및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하는 경우 또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⁸⁶⁾,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제74조 제1항 제1호)⁸⁷⁾로 그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신청 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본 법 시행 이전에 재산관계명시절차를 실시하였다면 재차 재산명시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4. 신청방법

채권자가 법원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은행 등 재산조회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회비용과 송달료를 내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요건 등에 대해 심리해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대상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하게 된다. 조회비용은 금융기관당 5천원, 부동산, 특허권 조회 2만원, 건물소유권 조회 1만원 등이다.

1) 법원의 관할

재산관계명시신청을 거친 후 동(同)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채권자(신청인)는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사건의 표시, 조회대상기관의 명칭, 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

86)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이 경우가 실제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는 명시기일의 실시가 성과가 없었던 때이다.

87) 이것은 2005년도 개정법률에서 새로이 추가된 내용인데, 이는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재산조회가 가능하게 하기 위함인데 즉, 채무자의 도주가 재산명시기일의 실시불능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 그 밖의 채무자의 인적사항, 조회할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 불이행채권액, 집행권원,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2년간 소급 적용한 부동산등기부 조회의 요구시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등을 기재한다.

소급조회는 조회기간은 재산조회신청일이 아니라 재산명시명령 송달일로부터 2년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법원행정처). 소급조회는 재산조회 신청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민사집행규칙 제35조) 소급조회와 현재 조회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청절차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제 74조 제1항 제35조). 재산명시절차를 선행절차로 한다. 따라서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낸다. 신청서에는 ①규칙 제25조 제1항에 규정한 재산명시신청의 경우와 같은 사항을 적고, ②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해야 하며 조회비용도 예납하여야 한다(제74조 제2항). 조회대상 기관은 개인의 재산·신용에 관한 전산망관리의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인데 여기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뜻을 밝힌다. ③조회할 재산의 종류도 기재하여야 한다. 조회할 기관으로서 토지·건물의 소유권→법원 행정처, 건물의 소유권→건설교통부,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특별시·광역시·도, 금융자산 중 50만원 이상의 것→금융기관인데, 이를 서면으로 특정을 하여야 한다(제36조 제1항). 조회의 대상은 조회당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임이 원칙이나, 법원행정처에 토지·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제 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2년 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내역에 대하여도 조회할 수가 있다(제36조 제2항).

6. 조회신청

1) 조회기관

채권자의 조회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고 사실이 소명되어 이유가 있다고 할 경

우에는, 법원은 조회할 기관장·단체장에게 의뢰하여 그 기관·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실시한다(제36조 제1항). 재산조회는 집행법원의 관할인데, 지금까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하였으나 2005년 7월부터는 법원 조직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사법보좌관의 업무가 되었다(법조 제 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의 재산조회의 허부 결정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대한 재판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이의신청(제16조 제1항)을 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제16조 제1항; 사보규 제3조 제2호). 법원은 조회시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기관·단체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일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74조 제3항). 다만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 시에 해당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하는 것에 그치고,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모든 예금채권을 포괄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법 제74조 제2항은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회할 기관을 모든 기관으로 함은 포괄적인 기관의 지정이 되기 때문이다.

2) 과태료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할 수 없다(제74조 제4항). 거짓자료의 제출이나 자료제출의 거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가 있다(제75조 제2항).

7. 재판

담당판사는 다음과 같이 재산조회 요건 등에 대해 심리 후 조회여부 등을 결정한다.

1) 각하 또는 이송

- ①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
- ② 비용예납이 누락된 경우 보정명령을 한 이후 불응하는 경우
- ※ 법원의 각하결정에 신청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③ 관할위반의 경우 이송 결정

2) 기각

- ① 조회요건에 대한 소명 부족
- ② 재산명시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한 경우

※ 법원의 기각결정에 신청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3) 조회결정

- ① 요건 등의 심리 후 '이유있다'고 판단 시
- ② 조회결정시에는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내역 용지에 날인한다.
- ③ 재산조회 회답기한을 정하는데 회답기한은 조회대상기관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3주 정도로 정함이 보통이다.

8. 해당기관 조회내용 제출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재산조회 자료를 법원이 정한 재산조회 회답기한 내에 제출한다.

9.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 등

조회법원의 업무가중을 고려하여 재산조회결과가 도착하였음을 신청인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대신 접수업무 담당 사무관이 재산조회 결과의 도착예상시기를 고지하여 주고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 대법원 홈 페이지를 접속 후 재산조회결과 도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부터 1개월 정도 소요된다.

조회결과가 도착하면 신청한 법원에 출두 해 본인확인을 받고 결과를 열람하

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때 재산조회 결과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조회신청인 이외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채권자도 열람·복사, 재산조회결과가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을 할 수가 있다.

<표-1> 해당기관과 재산조회 대상

순 번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1	법원 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	국토해양부	건물의 소유권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 권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 인 것
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8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9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간접투자 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5	보험업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16	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출처 : 민사집행규칙 별표

제 5 장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의 문제점

1. 재산관계명시 및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현황

< 표 2-1 > 재산관계명시 및 재산조회(2002~2008년)

	02년		03	
	재산관계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재산관계명시	재산조회
합 계	87,010	1,390	110,947	2,937
서울지방법원	28,978	488	27,208	979
인천지방법원	5,996	58	7,017	93
수원지방법원	8,547	151	12,487	246
춘천지방법원	2,571	42	3,907	57
대전지방법원	7,016	160	9,344	138
청주지방법원	2,264	13	3,800	300
대구지방법원	5,377	37	10,932	226
부산지방법원	7,745	213	11,890	399
울산지방법원	2,380	11	3,308	45
창원지방법원	5,206	38	6,499	100
광주지방법원	4,893	39	7,020	189
전주지방법원	5,632	127	6,749	108
제주지방법원	405	13	786	57

	04		05	
	재산관계명시	재산조회	재산관계명시	재산조회
합 계	126,408	2,241	123,721	2,036
서울지방법원	7,323	115	7,852	86
인천지방법원	8,786	87	9,250	36
수원지방법원	14,357	262	17,163	334
춘천지방법원	5,435	37	5,421	37
대전지방법원	9,471	195	9,801	165
청주지방법원	5,157	141	5,175	90
대구지방법원	10,999	111	10,057	115
부산지방법원	11,353	245	8,814	223
울산지방법원	4,744	28	3,692	50
창원지방법원	7,612	107	8,229	143
광주지방법원	7,028	146	6,074	137
전주지방법원	7,603	146	5,749	138
제주지방법원	816	100	789	63
	06	07	08	
	재산관계명시 및 재산조회	재산관계명시 및 재산조회	재산관계명시 및 재산조회	
합 계	108,379	124,240	127,799	
서울지방법원	8,094	7,161	7,368	
인천지방법원	8,759	10,303	10,734	
수원지방법원	14,325	14,526	15,928	
춘천지방법원	4,291	4,544	4,554	
대전지방법원	8,414	9,649	9,091	
청주지방법원	4,205	4,589	4,260	
대구지방법원	7,347	9,830	10,718	
부산지방법원	7,939	10,198	9,627	
울산지방법원	1,914	2,760	2,322	
창원지방법원	5,509	7,038	7,045	

광주지방법원	6,451	10,775	12,785
전주지방법원	5,238	6,157	5,073
제주지방법원	511	1,153	1,311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 <http://www.scourt.go.kr/justicesta>

2002년 재산명시는 총 87,010건이 이루어졌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총 1,390건이 등재됐다. 2003년부터는 재산관계명시와 재산조회로 나뉘는데 재산관계명시는 110,947건이, 재산조회는 2,937건이 이루어 졌다.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87,010건이 110,94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재산조회 역시 2,937건이 되었다. 이후 2004년도에는 재산관계명시가 126,408건 재산조회가 2,241건으로 2003년 대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재산관계명시 123,721건, 재산조회 2,036건으로 역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부터는 재산관계명시 및 재산조회가 합산된 건수로 표시되는데, 2006년 108,379건 2007년 124,240건 2008년 127,799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이 민사집행법제정 첫해인 점을 감안하면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의 급격한 증가의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이후 비슷한 수준을 보이던 재산관계명시 및 재산조회는 2006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10년전 IMF환란 이후 계속되는 10년 터울의 여파로 다시금 경제 환경의 악화로 채권·채무관계의 악화, 고소·고발 등의 금융사건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주기를 같이하고 있다.

2. 감치 및 과태료 현황

< 표 2-2 > 감치 · 과태료 사건(2004년)

	접수	처 리				
		계	감치	과태료	불처분	기타
합계	39,793	38,684	28,123	90	8,609	1,862
제 1 심	3,9776	38,667	28,119	79	8,609	1,860
항소심계	17	17	4	11	-	2
고등법원	10	10	-	10	-	-
지방법원	7	7	4	1	-	2
상소심	-	2	2	-	-	-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 <http://www.scourt.go.kr/justicesta>

< 표 2-3 > 감치 · 과태료 사건(2005년)

	접수	처 리				
		계	감치	과태료	불처분	기타
합계	50,751	46,432	33,831	122	10,530	1,931
제 1 심	50,733	46,396	33,827	109	10,529	1,931
항소심계	18	18	4	13	1	-
고등법원	13	13	-	13	-	-
지방법원	5	5	4	-	1	-
상소심	-	-	-	-	-	-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 <http://www.scourt.go.kr/justicesta>

< 표 2-4 > 감치 · 과태료 사건(2006년)

	접수	처 리				
		계	감치	과태료	불처분	기타
합계	48,816	42,298	28,853	487	11,713	1,245
제 1 심	4,8805	42,287	28,845	484	11,713	1,245
항소심계	11	11	8	3	-	-
고등법원	3	3	-	3	-	-
지방법원	8	8	8	-	-	-
상소심	-	-	-	-	-	-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 <http://www.scourt.go.kr/justicesta>

< 표 2-5 > 감치 · 과태료 사건(2007년)

	접수	처 리				
		계	감치	과태료	불처분	기타
합계	47,135	46,574	28,031	427	14,716	3,400
제 1 심	47,120	46,559	28,025	423	14,711	3,400
항소심계	15	15	6	4	5	-
고등법원	5	5	1	4	-	-
지방법원	10	10	5	-	5	-
상소심	-	-	-	-	-	-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 <http://www.scourt.go.kr/justicesta>

< 표 2-6 > 감치·과태료 사건(2008년)

	접수	처 리			
		계	감치	불처분	기타
합계	46,431	45,929	26,239	15,845	3,845
지방법원	46,428	45,928	26,239	15,844	3,845
고등법원	3	1	-	1	-
대법원	-	-	-	-	-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 <http://www.scourt.go.kr/justicesta>

감치·과태료 사건의 접수는 2004년 총 39,793건이 접수되었다. 이후 2005년에는 50,751건이 접수되었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06년 48,816건이 접수되었으며 2007년에는 47,135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8년 46,431건이 접수되어 역시 2007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급격한 증가세는 역시 상기에서 전술한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시행 첫해의 39,793건이 다음해 50,751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이후 46,000건~48,000건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은 역시 법률의 개정 후 시행 첫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이 90%이상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어 처리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으며 처리결과를 보면 절반 수준이 감치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3.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의 문제점

첫 번째는 실효성의 문제이다. 현재 재산명시신청은 상당부분 금융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재산명시신청 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아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더라도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드문 점, 채무자가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점, 감치결정은 대부분이 채무자의 불출석을 원인으로 하고 감치의 결정이 있더라도 미집행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빈번한 점 등은 여전히 재산명시 제도의 이용률에 비하여 그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재산조회제도의 경우에는 과거의 부동산 거래내역까지도 소급하여 조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조회제도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놓은 경우에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사생활의 비밀과의 조화 문제이다.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반면에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재산조회제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입법례로서 채무자의 사생활 보호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물론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도 제한불가능한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의 재산조회제도도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입법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것은 아니나, 이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사생활보호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악용될 경우는 악성채권자에 의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법제도상의 미비점이다.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는 계속 법규정들을 보완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세부적으로 보면 미흡한 점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재산개시절차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 기타 도산처리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재산개시절차의 실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산개시절차는 실효되고, 재산개시절차가 진행 중인 재판소는 동 절차의 실효결정을 하게 된다. 반면에 한국법에서는 재산명시절차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처리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산처리절차법규에도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다.

제 2 절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의 개선방안

첫째, 앞으로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위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강화⁸⁸⁾, 감치집행률의 제고, 채무자의 출석확보 등을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감치집행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민사집행규칙이 준용하는 위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을 개정하여 집행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위 규정을 폐지해 집행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형식적으로 명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되었는가를 꼼꼼히 심사하고, 불명확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고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등으로 기일을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채권자의 권리실현과 채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상호 충돌할 수 있는 가치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반면,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목적외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민사집행법과 마찬가지로 재산명시절차 및 그 기록의 열람 등에 의해 얻어지는 채무자의 재산 또는 채무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법과는 달리 한국법에서는 재산명시기일을 비공개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채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재산명시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⁸⁹⁾.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관계는 채무자의 사생활에 속하는 것이므로

88) 물론 민사집행법의 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제재로서 감치를 채용한 이유 중의 하나는 형사처벌이 민사상의 재산명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었으므로,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과할 적극적인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재검토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악질성이 명백히 드러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명시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대로 기능을 해 오지 않았던 실태, 검찰의 과도한 사무부담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 보면 한국법이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에 대하여도 불출석 등 다른 경우와 같은 제재, 즉 감치의 제재를 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9) 한편 재산조회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행하는 것이고,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

이 사생활보호의 관점을 한걸음 더 발전시켜 재산명시기일을 비공개로 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일본법의 경우가 더욱 타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에 관한 법규정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산명시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도산처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론

민사집행법에서의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는 고의적인 악성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제도로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위한 보조수단이자 채권자취소권을 보다 손쉽게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는 별개의 구분된 제도가 아니라 밀접한 제도로서 악의의 채무자 등이 선의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권리(자기정보통제권)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재산명시제도나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정보를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헌법 제17조와의 관계가 문제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명시제도나 재산조회제도가 헌법 제17조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 제 17조의 해석상 도출되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산조회결과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도 추진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과 채권자의 재산권이 조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등에서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민사집행법도 위와 같은 입법들과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민사집행법에 도입된 재산조회제도의 운용은 1차적으로 법원이 지고 있는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산조회제도가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인 만큼,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국회는 조속한 입법을 통하여 제도가 국민의 사생활 보장과 재산권 보장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적으로는 인접한 일본의 재산개시절차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입법 및 제도운용에 있어서도 일본의 예를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상원·박우동·이시윤·이재성, 『민사집행법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2.

-----, 『신강제집행법』, 고시계사, 2002.

법원행정처, 『새로운 보전처분 심리방식-전국 신청담당판사회의 결과보고서』, 2003.

-----, 『민사집행법 해설-구 민사소송법(집행절차편)개정부분』, 2002

-----, 『민사집행법 해설』, 2002,

-----, 『민사집행법Ⅱ』, 2003.

-----, 『민사소송법 개정안(집행절차 편) 및 민사소송법 순화안 공청회』, 1998.

-----,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개정착안점』, 1996.

-----,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Ⅰ』, 2003.

-----,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Ⅱ』, 2003.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4.

-----, 『신민사집행법(4판)』, 박영사, 2007.

2. 논문

- 강대성, “민사집행법안의 재산명시제도 관한 검토”, 『법이론과 실무』 제4집, 2000.
- 권오곤, “강제집행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우리재산명시제도와 미국의 집행보조 절차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17권, 1995.
- 김경옥,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문제점”, 민사소송Ⅱ, 1999.
- , “과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8권 제1호, 2001.
- 김상수, “재산명시제도의 개정과 앞으로의 전망”, 『법경제학연구』 제1권 제1호, 서경사, 2004.
- 김성완, “재산명시제도에 관한 고찰”, 『국회보』 통권 제425호, 2002.
- 김종백, “재산명시제도와 채무불이행자명부”, 『재판자료 제71집:민사집행에 관한 제문제(상)』, 1996.
- 남기정, “채무자의 재산명시절차”, 『법조』 제39권 제12호, 1990.
- 신현기, “재산명시등 제도 (上),(下)”, 『법무사』 통권 419호, 대한법무사협회, 2002.
- 심중순·이명우, “독일민사소송법상의 재산명시보증제도 및 채무자 명부제도에 관한 고찰”, 『민사법연구』 1호, 호남민사법연구회, 1991.

- 양병희, “재산명시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개선”, 『법조』 제48권 제11호, 1999.
- 유병현, “재산관계명시선서와 채권자취소권의 입증책임”, 『민사재판의 제문제(하)』, 1995.
- 이시윤, “최근의 민소법의 관례동향과 강제집행법상의 명시선서절차의 문제점”, 『판례월보』 제243호, 1990.
- 이영준, “독일의 선서보증제도의 이론과 실제”, 『재판자료36집:강제집행·임의경매에 관한 제문제(下)』, 1987.
- 임채웅, “재산명시절차 등에 관한 연구 : 대법원의 민사소송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법조』 제49권 제3호, 2000.
- 정동윤, “개정민사소송법상의 재산관계명시선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법조』 제40권 제1호, 1991.
- 정상태, “재산명시절차(上),(下)”, 『법무사』 제425호, 대한법무사협회, 2002.
- 진성규, “재산명시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사법논집』 제21집, 1990.
- 경영법무 편집부, “재산명시절차 등”, 『경영법무』 통권 제133호, 2007.
- 今井輝幸(이마이 테루유키), “일본의 재산개시절차”, 『법조』 제54권 제9호, 2005.
- 榎本光宏(에노모토 미쯔히로), “財産開示手續”, 『金融法務事情』, 1696호, 2003.

<부록-1> 재산명시신청서

재산명시신청서

채권자 김갑돌
620707-1093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채무자 김을순
670115-20933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

1.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가단 169179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2.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금전채무액
돈 60,000,000원 및 지연이자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바랍.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8가단 169179 대여금사건의 2008.9.26선고한 판결정본에 의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위 판결정본을 2002.10.7.송달받고도 판결에서 명한 돈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7.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찾아보았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 | |
|----------------|----|
| 1. 집행력있는 정본 | 1통 |
| 2. 송달증명 | 1통 |
| 3. 확정증명 | 1통 |
| 4.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1통 |

2008. 10 .28

채권자 김 갑 돌(인)
(전화번호 3480-1110)

○○지방법원 귀중

<부록-2> 재산명시명령결정

○○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08카명 9122 재산명시
채 권 자 김갑돌(620707-1093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채 무 자 김을순(670115-20933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
집행 권원 ○○지방법원 2008.9.26 선고 2008가단 169179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

주 문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 기일까지 제출하라.

이 유

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초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 62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30

판사 최 정 국(인)

주의 : 재산명시절차 및 재산목록작성에 관한 자세한 안내서는 추후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보내드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3> 재산명시기각결정

○○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08가명 9122 재산명시
채 권 자 김갑돌(620707-1093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채 무 자 박을순(670115-20933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
집행 권원 ○○지방법원 2008.9.26 선고 2008가단 169179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952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 62조 제2항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30

판사 최 정 국(인)

<부록-4>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 권 자 김갑돌(620707-1093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채 무 자 박을순(670115-20933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
덕수아파트 101동 202호

신청취지

이 법원이 2008.10.30.한 2008 카명 9122 재산명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신청이유

1. 채무자는 2002.10.31이 건 채무액의 절반인 돈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 채무자는 채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설정이나 처분제한등기없이 가지고 있어, 채문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 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 | |
|-------------|----|
| 1. 영수증 | 1통 |
| 2. 부동산등기부등본 | 1통 |

2008. 11 . 8

채무자 박을순(인)
(전화번호 02-503-9765)

○○지방법원 귀중

<부록-5> 재산명시명령취소결정

○ ○ 지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08카명 9133 재산명시이의
채 권 자 김갑돌(620707-1093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채 무 자 박을순(670115-20933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

주 문

이 법원이 2008.10.30.한 2008카명 9122재산명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채무자는 채무의 절반인 돈 30,000,000원을 이에 변제하였고, 도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1

판사 최 정 국(인)

<부록-6> 재산명시이의 기각결정

○○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08카명 9133 재산명시이의
채 권 자 김갑돌(620707-1093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채 무 자 박을순(670115-20933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
재산명시명령 ○○지방법원 2008.10.30.자 2008카명 9122결정

주 문

채무자의 이 사건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지정한 2008.10.9. 10:00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63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1

판사 최 정 국(인)

<부록-7>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지방법원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사 건 2008카명 9122 재산명시
 채 권 자 김갑돌(620707-1093312)
 채 무 자 김을순(670115-2093313)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의 아래 집행권원에 기초한 신청에 따라 귀하에 대한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게 되었으니 2008. 12.16.10:00이 법원이 제 101호 법정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집행 권원 ○○지방법원 2008.9.26.선고 2008가단 169179 확정판결

유의 사항

1. 위 명시기일에는 귀하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2. 귀하는 별첨재산목록양식에 따른 재산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위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별첨 안내사항과 작성요령에 관한 설명을 주의 깊게 읽은 후 그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는 위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귀하가 작성·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08. 11 .14

법원주사 이 무 곤(인)

- 주 의 1.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과 도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건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재산명시절차 안내서 및 재산목록 양식 각 1부.

법원이 있는곳		담당	제 단독	전화	대표전화 구내
---------	--	----	------	----	---------

○○ 지방 법 원

재 산 명 시 기 일 통 지 서

채권자 김갑돌 귀하

사 건 2008카명 9122재산명시
채 권 자 김갑돌
채 무 자 김을순

위 사건에 관하여 2008. 12. 16. 10:00에 이 법원이 제101호 법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08. 11 .14

법원주사 이 무 곤(인)

- 주 의
1. 채권자는 위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있는곳		담 당	제 단독	전화	대표전화 구내
------------	--	-----	------	----	------------

<부록-9> 재산명시절차안내 및 재산목록작성요령

제1. 절차안내

귀하는 출석요구된 재산명시기일에 별지 양식에 의한 귀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위 기일에 출석하여 3월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위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고, 그 연기된 기일에서 채무액의 3분의 2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위 기일에는 귀하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만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위 선서를 한 뒤라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귀하가 작성, 제출한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2. 재산목록 작성요령

1. 일반적 주의사항

가. 첨부된 재산목록은 만년필이나 볼펜을 사용하거나 컴퓨터 등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백하게 해당사항을 기입,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의 해당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도의 별지에 기입하고, 양식의 해당란과 귀하가 작성한 별지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양식의 해당란에는 “별지1에 기재”라고 표시하고, 별지1에는 “양식의 1번 항목에 관한것”이라고 부기함)

다. 각 항목에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그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라. 별지 재산목록 양식의 I 의3,II 및 IV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제3자에게 명의 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또는 등록이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것도 그 재산 및 명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항목의 기재요령

I. 동산

이 난의 기재시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되, 귀하 및 귀하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필수품,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보조기구 등, 민사집행법 제195조 소정의 압류금지물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압류금지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규정을 참조할 것)

1. 현금 : 외화를 포함하여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금전의 총액과 그 보관장소를 기재
2. 어음·수표 :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의 발행인, 지급인, 지급기일, 지급지, 액면금액에 의하며 어음과 수표의 각 액면금이 50만원 이상인 것 외에,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도 기재할 것(예: 어음의 액면금은 30만원, 수표의 액면금은 40만원인 경우에도 각각 기재한다.)
3.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의 종류, 발행인, 가액, 수량, 만기일,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은 가액은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4. 금·은·백금류 :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금·은·백금과 금은제품 및 백금제품을 품명, 중량, 제품의 종류, 가액, 보관장소를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은 이 재산목록 작성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2번의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5.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를 품명, 크기, 수량, 가액,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은 이 재산목록 작성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의하며, 품목당 1개의 가액이 30만원이상인 것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여러개의 품목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것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만, 여러개가 집합되어 하나의 구조물을 이룬 경우(예:진주목걸이)에 그 가액이 30만원 이상인 것은 기재할 것.

6. 가사비품(의류·가구·가전제품 등) :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의류·가구·가전제품 등의 가사비품을 품명, 재질,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방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7. 사무기구 :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를 종류,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방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8. 가축 및 기계류(농기계를 포함) :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기계류를 품명,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방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9. 농·축·어업·공업생산물 및 재고상품 :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물(1월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물과 재고상품을 종류, 수량, 단가,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방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10. 기타의 부동산 : 4번 내지 9번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유체동산으로서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것을 기재하되, 그 기재요령과 가액의 산정방법은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II.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이 난의 기재시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되, 명의 신탁된 재산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하며,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을 받은 제3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아울러 기재하여야 합니다.

11. 부동산 소유권 :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방법은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고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것.

12. 용익물건(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 부동산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및 지료, 목적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

13.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부동산의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 부동산에 관

한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예: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자, 대금액,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14.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3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여 기재할 것.

15.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권리의 종류, 광물 또는 어업의 종류(예: 금, 근해선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3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여 기재할 것.

Ⅲ. 채권 기타의 청구권

이 난의 기재시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되,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병사의 급료등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의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6.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정기적으로 받을 부양료를 보수 또는 부양료의 종류와 금액,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와 부양관계의 성립일자, 고용주 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보수 또는 부양을 지급받는 일자를 구분하며 기재할 것. 보수 또는 부양료의 다과를 불문한다.

17. 기타의 소득(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16번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기타의 소득으로서 각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소득을 소득의 종류, 금액, 근거 또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아울러 기재할 것.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18. 금전채권 :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을 채권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예: 2005.1.1.자 대여), 금액, 변제기일,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동일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은 개개의 채권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채권을 기재할 것. 저당권, 유치권, 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아울러 기재할 것.

19. 대체물의 인도채권 : 5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을 18번 항목의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

20. 예금 및 보험금, 채권 :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각종 예금과 보험금 5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을 예금 또는 보험계약의 종류, 예금액 또는 보험금액, 계약일자, 계약의 상대방(예탁한 은행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명칭과 소재지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21. 기타의 청구권(앞의 3번 내지 9번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권리 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 10번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목적물의 종류, 수량, 대금액, 근거,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10번 항목의 설명 참조).

IV. 특허권·회원권 등의 권리

22. 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 권당 가액 3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를 종류, 발행인, 수량,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 그 이전청구권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근거와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아울러 기재할 것. 가액의 산정은 4번 및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23. 특허권 및 그 이전청구권 : 각 권리의 종류, 내용, 등록일자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그 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2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24번 내지 27번 항목 : 위 23번 작성요령과 동일

V.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이 난에는 귀하가 이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유상양도한 모든 부동산과 같은 기간내에 귀하와 29번 항목 소정의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상양도한 부동산 외에 일체의 재산,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처분한

재산(다만, 의례적인 선물을 제외한다.) 일체를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할 때에는 재산목록 뒷장 내역에 재산의 표시, 거래내역,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채무자와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VI. 기 타

이 난에는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 작성례

○ 앞면

번호	구분	재산의 종류
I	동산	<input type="checkbox"/> 1. 현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어음·수표 <input type="checkbox"/> 3.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input type="checkbox"/> 4. 금·은·백금류 <input type="checkbox"/> 5.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6. 가사비품(의류·가구·가전제품 등) <input type="checkbox"/> 7. 사무기기 <input type="checkbox"/> 8. 가축 및 기계류(농기계를 포함) <input type="checkbox"/> 9. 농·축·어업·공업생산물 및 재고상품 <input type="checkbox"/> 10. 기타의 동산

○ 뒷면

재산의 종류	내역	재산의 종류	내역
2. 약속어음	액면금:1000만원 어음번호: 자가137290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 발행인: 000 지급기일: 2000.0.0 발행지 및 지급지:(주)00은행 보관장소: 본인소지	6. 가사비품	품명: 디지털카메라(ALPHA-7) 재질: 알루미늄 수량: 1대 가액: 60만원 소재장소: 거실

사건 : 카명				
재 산 목 록				
채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아래 재산의 종류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별첨 작성요령에 따라 뒷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번호	구 분	재산의 종류
I	동 산	<input type="checkbox"/> 1. 현금 <input type="checkbox"/> 2. 어음·수표 <input type="checkbox"/> 3. 주권·국채·공채·회사채등 <input type="checkbox"/> 4. 금·은·백금류 <input type="checkbox"/> 5.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input type="checkbox"/> 6. 가사비품(의류·가구·가전제품 등) <input type="checkbox"/> 7. 사무기구 <input type="checkbox"/> 8. 가축 및 기계류(농기계를 포함) <input type="checkbox"/> 9. 농·축·어업·공업생산물 및 재고상품 <input type="checkbox"/> 10. 기타의 동산
II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input type="checkbox"/> 11. 부동산 소유권 <input type="checkbox"/> 12.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input type="checkbox"/> 13.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부동산의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14.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15.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III	채권 기타의 청구권	<input type="checkbox"/> 16.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input type="checkbox"/> 17. 기타의 소득(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16번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18. 금전채권 <input type="checkbox"/> 19. 대체물의 인도채권 <input type="checkbox"/> 20. 예금 및 보험금 채권 <input type="checkbox"/> 21. 기타의 청구권(앞의 3번 내지 9번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IV	특허권·회원권 등의 권리	<input type="checkbox"/> 22. 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23. 특허권 및 그 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24. 상표권 및 그 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25. 저작권 및 그 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26. 의장권·실용신안권 및 그 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27. 기타(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장권·실용신안권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V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28.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29. 재산명시명령에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유상 양도한 부동산 외에 재산 <input type="checkbox"/> 30.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의례적인 선물을 제외한다.)
VI	기 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위 목록 전체 “ 해당사항 없음 ”		

Abstract

Study on the Property Disclosure and Property Inquiry in Civil Execution

LEE KI HYUK

The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or Prof. HA SEUNG SOO

'Property Disclosure' is the measure that the court let debtors submit the property list describing their current property and the property disposed within the certain period and announce the trustworthiness of the list in the court when a debtor does not pay the debt. It plays a role of supplementary measure of forcible execution.

'Property Inquiry' is the measure that creditor can ask the network of banking organ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 to reveal the debtor's property status by the application to the court and find out the intentionally property of a debtor for avoiding the mandatory levy. It was newly introduced in July, 2005.

'Property Disclosure' and 'Property Inquiry' both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protecting the creditor over insincere and ill-intentioned debtor. However, current practices of these measures have also some problems. Despite several modifications,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 has not yet been proved. Also the issue of protecting a debtor's privacy should be solved. Until now, there have been some loop holes in the law.

Therefore, each law needs to be improved as the following.

Firstl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operty Disclosure', we should

strengthen criminal penalties and prepare a device to ensure that the debtor attends the court.

Secondly, we need to seek for the harmony of realizing the right of a creditor and protecting the privacy of a debtor. We thus need to prepare the regulation for preventing the information revealed by 'Property Disclosure' from being abused with a bad purpose.

Also, we need to reinforce the protection of debtor's privacy by stipulating in writing that the day of 'Property Disclosure' should be held behind closed doors.

Thirdly 'Property Disclosure' and 'Property Inquiry' need to be made up for the weak points. Especially bankruptcy measurement in the middle of the Property Express procedure needs to be stipulated in writing. Also, the court responsible for practicing 'Property Disclosure' and 'Property Inquiry' should try to harmonize the mutual interest of both creditors and debtors in the specific case. In case of 'Property Inquiry', it is peculiar in Korea. so,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establish the complementing laws in the near future.